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산지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梁 聖 周

2018年 8月

碩士學位論文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산지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ules of Origin for  
Export Promotion Plans in Jeju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貿易學科

梁 聖 周

2018年 8月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산지관리제도 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Rules of Origin for  
Export Promotion Plans in Jeju

Seong-Ju Yang  
(Supervised by professor Jae-Sung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August. 201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La, Kong - Woo  
Hur, Yun - seok  
Hong, Jae - Sung

August. 2018.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3
제3절 논문의 구성체계 .....	4
제 2 장 원산지관리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5
제1절 원산지관리제도의 이해 .....	5
1. FTA개관 .....	5
2. 한국FTA 개관 .....	15
3. 한국의 원산지 규정 .....	20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33
제 3 장 제주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	39
제1절 제주 지역의 경제 및 수출현황 .....	39
1. 제주지역 일반현황 및 산업구조현황 .....	39
2. 제주지역 수출현황 .....	41
제2절 설문항목 구성 및 설문방법 .....	46
1. 설문항목 구성요소 및 배경 .....	46
2. 설문조사방법 .....	48
제3절 설문조사 실태분석 및 인터뷰 분석 .....	49
1. 설문조사 실태분석 .....	49
2. 인터뷰 분석 .....	57
제 4 장 실태 및 인터뷰 분석의 종합적 결론과 방안 .....	61

제1절 실태 분석의 종합적 결론 .....	61
1. 설문지 조사의 종합적 결론 .....	61
2. 인터뷰 조사의 종합적 결론 .....	63
제2절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	64
제 5 장 결 론 .....	66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	6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	67
참고문헌 .....	69
Abstract .....	72

## < 표 차 례 >

[표 2-1] FTA의 범위 .....	6
[표 2-2] 한·EU 각 장별 주요 내용 .....	7
[표 2-3]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	8
[표 2-4] 한·미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	14
[표 2-5] 한국의 FTA 추진현황 .....	15
[표 2-6] 주요국 FTA 발효 전·후 수출액 비교 .....	19
[표 2-7] 원산지 결정 기준의 구조 .....	23
[표 2-8] 교토협약의 완전생산기준 .....	24
[표 2-9] 실질적 변형기준의 종류 .....	25
[표 2-10] 실질적 변형기준의 장단점 비교 .....	28
[표 2-11] 선행연구 요약 .....	38
[표 3-1] 제주의 기본 현황 .....	39
[표 3-2] 제주의 산업분류별 업체 및 근로자 현황 .....	40
[표 3-3] 제주지역 연도별 부문별 수출실적 .....	42
[표 3-4] 제주지역 주요품목 수출현황 .....	43
[표 3-5] 제주의 1차산업 주요 품목별 수출증감률 .....	44
[표 3-6] 제주지역 주요국 수출입 현황 .....	45
[표 3-7] 제주지역 대륙별 수출 현황 .....	46
[표 3-8] 설문항목 구성을 위한 근거 .....	47
[표 3-9] 응답업체 일반현황 .....	50
[표 3-10] FTA 활용 정도에 대한 응답 분석표 .....	52
[표 3-11] FTA교육에 대한 응답분석표 .....	53
[표 3-12] 수출업무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답변 사례 .....	54
[표 3-13] FTA 활용에 대한 응답 분석표 .....	55
[표 3-14] 제주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	55
[표 3-15] 원산지관리제도 개선 및 요구사항 .....	56
[표 3-16] H주식회사 면담조사 내용 정리표 .....	58
[표 3-17] U법인 면담조사 내용 정리표 .....	59
[표 3-18] M주식회사 면담조사 내용 정리표 .....	60

〈 그림 차례 〉

[그림 I-1] 연구의 전개과정 ..... 4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GATT(관세 및 일반 무역에 관한 협정)에 이어 WTO(세계무역기구)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무역을 자유롭게 하고자 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FTA(자유무역협정)이 새로운 경제 트렌드로 확산되었다. WTO체제에서의 다자주의적 통상정책에서 탈피해 세계 각국이 국가 간의 동시다발적인 FTA를 체결하여 체결 당사자 간의 양자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또는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또는 면제함으로써 무역 당사자 간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하며 특히 무역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sup> 시기별로 보면 지역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04년 칠레와의 최초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FTA를 국가통상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적용시키기로 적용한 후 2016년 한·콜롬비아 FTA까지 54개국 15건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국의 적극적인 FTA를 중심으로 한 대외무역정책은 많은 체결 건수는 물론이고 EU,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한 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자원부국, 신흥개도국 시장 등과의 전략적 차원의 FTA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sup>2)</sup>

FTA체결로 인한 무역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한·중·미 FTA는 이미 타결

1)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main>)

2) 김학민 외 3명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KOTRA, 2016, p94

이 되어 서명절차만 남았으며 협상이 진행 중인 FTA도 한·중·일 FTA를 비롯해서 한·RCEP, 한·에콰도르 SECA, 한·이스라엘FTA<sup>3)</sup>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서둘러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FTA가 향후 치열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수단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의 형성과 기대의 반영이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영토와 부존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지향적인 정책을 펼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히는 것은 필연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FTA체결은 대외의존도를 더욱 높여서 타국가의 경제 불안정이 국내경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좁은 국내시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체결은 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완화로 인해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측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계추세이다.

이렇게 확장된 경제영토에서 실질적인 FTA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원산지증명을 발급을 통해 체결국 바이어에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관세청 내부토론자료 “FTA 관세행정 환경 및 여건(2014.8)”에 따르면 FTA체결국 수출기업 약5.2만 여개 중 1.9만 여개가 FTA를 활용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기업 9만 여개 중 약 20%에 해당하는 기업이 활용하고 있어 아직까지 체결한 FTA 특혜관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sup>4)</sup>

많은 국가와의 FTA체결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 관세특혜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했으나 각 국가마다 다르고 복잡한 FTA 원산지규정으로 인해 스파게티볼 효과<sup>5)</sup>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14.5.30.)에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애로사항과 향후 필요정책 서비스를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애로사항으로 정보부족(20.3%), 사후검증부담(15%), 원산지 관리 어려움(14.4%), 전문인력 부족(14%), 동기부족(11.4%) 등을 결과가 나타났다.

제주지역 기업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농,수,축산업과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는 산업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할 경우 역시나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며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는 FTA 체결로 인한 수출 증가 등의 혜택을 체감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제주수출 기업

3)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main>)

4) 박홍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쟁점사례연구”, 관세학회지, 2016년, p126

5) 콜롬비아 대학 Bhagwati 교수가 복잡하고 엄격한 원산지 규정의 폐해를 “스파게티볼 효과”라 처음 불렀다.

들이 어떻게 원산지제도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응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제주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원산지제도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응 실태와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된 원산지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을 먼저 검토하였으며, 제주지역 경제를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지역 수출기업들이 원산지제도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설문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구성을 위해 국내의 일반 및 학술논문, 제주도 및 기타 지역에서 발간한 단행본, 연구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제주지역의 무역 및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여 제주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제도에 대한 실태를 검증하여 향후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업의 실태 검증을 위한 설문은 제주도내의 수출기업으로 한정하였고, 2018년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메일, 전화, 직접 상담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에 대한 배경, 목적, 방법, 내용 그리고 논문의 전체 구성 체계를 기술하였다.

제2장은 원산지관리제도의 이해와 FTA에 대한 분석,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과 내용을 파악하고 원산지규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분석한 이후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차별성을 구체화시켰다.

제3장은 제주지역 일반현황과 수출현황을 분석하였고 설문항목의 구성 및 설문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제4장은 제주수출기업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제주수출활성화를 위해 원산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고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제3절 논문의 구성 체계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3절 논문의 구성 체계
--------	---



본 론	제2장 원산지관리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제1절 원산지관리제도의 이해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장 제주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제1절 제주지역 경제 및 수출현황 제2절 설문 항목 구성 및 설문 방법 제3절 설문조사 실태분석 및 인터뷰 분석
	제4장 실태 및 인터뷰 분석의 종합적 결론과 방안 제1절 설문조사 분석의 종합적 결론 제2절 인터뷰 조사의 종합적 결론



결 론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한계점
--------	--

[그림 1-1] 연구의 전개과정

## 제 2 장 원산지관리제도 및 선행연구 분석

### 제1절 원산지관리제도의 이해

원산지관리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FTA에 대한 내용이 숙지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FTA 현황을 검토하고 원산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FTA의 개관

##### 1) FTA의 의의

① FTA(자유무역협정 : Free Trade Agreement)는 협정국 당사자 간 교역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완화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협정이다. 협정은 체결 당사국간 단순히 특혜관세 적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전반적인 법과 규정들을 양국의 제도 안에서 반영시키고 개선함으로써 협정국간의 경제영토를 확대시키고자 함이 목적이다. 하지만 FTA의 가장 큰 관심은 물품교역의 관세인하 또는 철폐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산품에 비해 농수산품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상에 있어 국내의 피해가 예상되는 1차산업 관계자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관세철폐 시기에 대한 논의와 대상품목의 선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는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관세양허 일정이 보통 5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조정되어 있다.<sup>6)</sup>

FTA가 체결이 되면 모든 상품에 대해 조건 없이 특혜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체결 당사자 국가간 특혜원산지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협정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특혜를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당사국간에 FTA가 발효 되었다 하더라도 원산지규정이 자국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환경이 다르다면 생산방식을 변경하거나 수입원자재 사용을 국내산 원자재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FTA가 미치는 영향은 특혜관세적용을 위한 관세율 인하·철폐 외에도 다양하다. 요즘 체결되는 FTA 협상은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

6)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p.380.

자, 무역법규, 경제협력 등이 모두 포함된 협정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상품분야의 협정을 우선 진행하고 경과 기간을 두어 투자와 서비스 분야로 적용범위를 넓힘으로써 선진국과의 교역에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표 2-1] FTA의 범위

구 분	내 용
관 세 (Tariff)	- FTA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철폐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5년, 10년, 15년까지 설정 관세철폐 예외 품목을 인정(농산물 등)
원산지 규정 (Rules of Origin)	- FTA의 특혜는 체결당사국간 생산된 상품에만 적용 역외국이 FTA 체결당사국을 통하여 FTA를 체결한 해당국가로 우회 수출 막고 비체결국이 관세상의 특혜를 받지 못하게 함 상품 원산지에 따라 특혜 관세 적용 여부 결정
서비스	- 서비스 분야의 무역 장벽도 제거 금융, 통신, 의료, 교육 등
투 자	- 투자 시장에 대한 개방 규제 완화 당사국 간 투자 활성화위해 노력
정부조달	- 협상 체결국 간 정부조달에 대해 일부 또는 완전 개방 정부조달 시장은 규모가 커서 주요 관심대상 조달시장은 여러 장벽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에게만 혜택
지식 재산권	- 수출상품의 특허권, 상품권 등 지식재산권 보호 수출상품의 위조 또는 도용 방지 목적
무역구제	- 반덤핑 및 세이프 가드 조치 FTA 체결국 간의 반덤핑 및 세이프 가드 조치 상호 면제
비관세 장벽: 표준관련 조치와 위생검역 조치	- 관세 이외의 다른 무역장벽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 -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 및 표준 FTA에서는 각 체결 당사국이 보유한 있는 독자적인 기술 및 표준규정을 인정. 다양한 의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규정 도입을 통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함 - 농수산물과 관련된 위생·검역 절차 및 통관절차 위생·검역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는 사람과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함 협정 체결국들에게 부당한 차별 금지 보장 - 외환규제, 국영무역의 존재, 선적 전 검사 등
분쟁해결	- FTA 체결국 사이의 분쟁관련 협정문 다른 국제기구(ex:WTO)의 분쟁해결절차로 갈 것이 아니라 FTA 체결 협정 내용대로 해결함으로써 시간과 비용 등 절약

자료 : 외교통상부 (www.fta.go.kr)

예를들어 한·EU FTA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자유화와 무역관련 규범이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서비스, 자본이동,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표 2-2] 한·EU FTA 각 장별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양허표
3장	무역구제 규정
4장	무역 기술장벽 관련 규정
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7장	서비스 무역 및 전자상거래
8장	지급 및 자본이동
9장	정부조달 관련 규정
10장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11장	경쟁정책 관련 규정
12장	투명성강화 규정
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규정
14장	분쟁해결 규정
15장	제도 일반 최종규정

자료 : 한·EU FTA 협정문

## 2) FTA의 체결 추이

FTA의 상위 개념인 지역무역협정(RTA) 혹은 지역주의는 FTA, 관세동맹, 특혜 무역협정 등을 총칭하는 의미이며,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한 회원국은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WTO에 따르면 2018년 1월 기준 WTO를 통해 파악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455건이며, 이 가운데 상품무역을 다룬 자유 무역협정(FTA)이 2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지역 무역협정은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전체 455건의 협정 중 95년 이후에만 전체의 89.0%에 해당하는 405건이 발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7)</sup>

7)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http://www.fta.go.kr/main>)

각국이 체결한 FTA현황은 아래[표 2-3]과 같다.

[표 2-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국가명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한국	(발효) 칠레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ASEAN FTA, 인도 CEPA, EU FTA, 페루 FTA, 미국 FTA, 호주 FTA, 캐나다 FTA, 터키(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중국 FTA, 뉴질랜드 FTA, 베트남 FTA, 콜롬비아 FTA	(협상중) 한중일 FTA, RCEP, 에콰도르 SECA, 이스라엘, ASEAN FTA(추가 자유화), 인도 CEPA(개선), 칠레FTA(개선), 미국 FTA(개정), 중국 FTA (서비스·투자후속협상)	
	(서명) 터키FTA(서비스·투자협정), 중미	(협상재개·개시 여건조성) GCC, 멕시코, MERCOSUR, EAEU	
일본	(발효) 싱가포르EPA,멕시코EPA,말레이시아 EPA, 칠레 FTA,태국 EPA, 인도네시아 EPA, 브루나이 EPA, 필리핀 EPA,ASEAN EPA, 스위스 EPA,베트남 EPA, 인도 EPA, 페루 EPA,호주 EPA, 몽골 EPA	(협상중) 캐나다 EPA, 콜롬비아 EPA, 한중일 FTA,RCEP, 터키 EPA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뉴질랜드 FTA
	(타결) EU EPA	(협상재개·개시 여건 조성)한국 FTA, GCC FTA,MERCOSUR TA	
	(서명) CPTPP		
중국	(발효) 태국 FTA, 홍콩 CEPA,마카오 CEPA, ASEAN FTA,칠레 FTA, 파키스탄 FTA,뉴질랜드 FTA, 싱가포르 FTA,페루 FTA, 코스타리카 FTA,대만 ECFA, 아이슬란드 FTA,스위스 FTA, 한국 FTA, 호주 FTA, 조지아 FTA	GCC FTA, 노르웨이 FTA,한중일 FTA, CEP, 스리랑카 FTA, 이스라엘 FTA,모리셔스FTA,몰도 바 FTA	인도 RTA, 콜롬비아 FTA, 네팔 FTA, 캐나다 FTA, 몽골 FTA, 파나마 FTA
	(서명) 몰디브 FTA	(개선협상) 뉴질랜드 FTA,싱가포르 FTA	
대만	파나마 FTA, 과테말라 FTA, 니카라과 FTA, 뉴질랜드 ECA, 온드라스·엘살바도르 FTA, 싱가포르 ASTEP, 중국 ECTA	(협상중) 도미니카공화국 FTA, 파라과이 FTA (협상중단) EU FTA	인도 FTA, 말레이시아 FTA,이스라엘 FTA, 필리핀 FTA,TPP, 미국, 호주, EU,인도네시아, ASEAN, FTAAP
ASEN	(발효) 중국 FTA, 일본 EPA, 한국 FTA, 인도FTA,호주·뉴질랜드 FTA	RCEP	캐나다 FTA, EAEU FTA
	(서명) 홍콩 FTA		

싱가포르	(발효)ASEAN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AFTA, 뉴질랜드 CEP, 일본 FTA, EFTA FTA, 호주 FTA, 미국 FTA, 요르단 FTA, 인도 FTA, 한국 FTA, P4(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파나마 FTA, 중국 FTA, 페루 FTA, GCC FTA, 코스타리카 FTA, 대만 ASTEP	멕시코 FTA, 캐나다 FTA, 파키스탄 FTA, 우크라이나 FTA, RCEP	FTAAP, 이집트 CECA, EAC, 콜롬비아, 모로코, 스리랑카
	(타결) EU FTA, 터키 FTA		
	(서명) CPTPP		
인도네시아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 EPA	EFTA CEPA, 호주 CEPA, 한국 CEPA, 인도 CECA, 칠레 FTA, RCEP, EU FTA	터키 FTA, 페루 FTA, FTAAP, GCC, 이집트, 파키스탄, 미국, 튀니지 FTA
태국	(발효)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중국 FTA, 호주 FTA, 뉴질랜드 CEP, 일본 EPA, 페루 FTA, 칠레 FTA	(협상중) 인도 CECA, EFTA FTA, BIMST-EC FTA(벵갈만 경제협력체: 방글라데시, 미얀마 인도, 부탄, 네팔, 스리랑카, 태국), RCEP, 파키스탄 FTA	캐나다 FTA, FTAAP, 터키 FTA, 남아공, 바레인, 이스라엘, 한국, MERCOSUR, 폴란드, 바레인, UAE, TPP
		(협상중단) 미국 FTA, EU FTA	
베트남	(발효)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 EPA, 칠레 FTA, 한국 FTA, EAEU FTA	(협상중) EU FTA, RCEP, EFTA FTA	FTAAP,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
	(서명) CPTPP		
말레이시아	(발효) ASEAN 전체차원(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AFTA, 일본 EPA, 파키스탄 CEPA, 인도 CECA, 뉴질랜드 FTA, 칠레 FTA, 호주 FTA, 터키 FTA	(협상중) EU FTA, RCEP, EFTA FTA	한국 FTA, 대만 FTA, FTAAP, 이집트 FTA, GCC FTA, 시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서명) CPTPP		
인도	(발효) 스리랑카 CEPA, SAFTA (남아시아特惠무역협정: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싱가포르 CECA, 부탄 FTA, ASEAN FTA, 한국 CEPA, 일본 CEPA, 말레이시아 CECA	(협상중) 태국 CECA, BIMST-EC FTA, EU BTIA, EFTA FTA, 뉴질랜드 CECA, 호주 CECA, 인도네시아 CECA, RCEP, 캐나다 CEPA, 이스라엘 FTA, EAEU FTA	페루 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CECA, 파키스탄 TA, 중국 RTA, 대만 FTA, 터키 FTA, 우루과이, COMESA PTA(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칠레, 페루, 이집트, 이란, 남아공, 모리셔스
		(협상중단) GCC FTA	

미국	(발효) 이스라엘 FTA, NAFTA(북미 자유무역지대:캐나다,미국,멕시코), 요르단 FTA, 싱가포르 FTA, 칠레 FTA, 호주 FTA, 모로코 FTA, 바레인 FTA, DR-CAFTA, 오만 FTA, 페루 TPA, 한국 FTA, 콜롬비아 TPA, 파나마 TPA	SACU FTA, CAN FTA(안데안공동체: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에콰도르 FTA, FTAA, UAE FTA, 말레이시아 FTA, 태국 FTA, NAFTA, 한국 FTA	FTAAP(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지대)
	(협상중단)EU TTIP		
캐나다	(발효)NAFTA, 이스라엘 FTA, 칠레 FTA, 코스타리카 FTA, EFTA FTA, 페루 FTA, 콜롬비아 FTA, 요르단 FTA, 파나마 FTA, 온두라스 FTA, 한국 FTA, EU CETA	CARICOM FTA, CA4 FTA(중미4개국: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FTA,인도 CEFA, 일본 EPA, 모로코 FTA, 싱가포르 FTA, 우크라이나 FTA, NAFTA, MERCOSUR FTA, 태평양동맹(PA)	CAN FTA, 터키 FTA, 태국 FTA, 중국 FTA
	(서명)CPTPP	(협상중단)FTAA(미주자유무역지대:쿠바를 제외한 미주34개국)	
멕시코	NAFTA, 코스타리카 FTA, 볼리비아 FTA, G3(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06년 베네수엘라 탈퇴), 니카라과 FTA, 칠레 FTA, 이스라엘 FTA, EU FTA, Northern Triangle FTA(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EFTA FTA, 우루과이 FTA, 일본 EPA, 페루 FTA, 파나마 FTA, 중미 FTA(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태평양동맹(PA)	(협상중) 터키 FTA, 요르단 FTA, 파라과이 FTA, NAFTA	에콰도르, FTAAP, 브라질 SEIA, 필리핀 FTA
	(서명) CPTPP	(협상재개 여건조성) 한국 FTA, 싱가포르 FTA	
		(협상중단) FTAA, MERCOSUR FTA (개선협상) EFTA FTA, EU FTA	
칠레	(발효) 캐나다 FTA, 멕시코 FTA, 중미 FTA, EU FTA, 미국 FTA, 한국 FTA, EFTA FTA, P4, 중국 FTA, 일본 EPA, 파나마 FTA, 호주 FTA, 페루 FTA, 콜롬비아 FTA, 터키 FTA, 말레이시아 FTA, 베트남 FTA, 홍콩 FTA, 태국 FTA, 태평양동맹(PA)	(협상중) 인도네시아 FTA	도미니카공화국 FTA, FTAAP,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서명) CPTPP	(협상중단) FTAA, 이스라엘 FTA	

페루	(발효) CAN CU, MRCOSUR FTA, 미국 TPA, 칠레 FTA, 싱가포르 FTA, 캐나다 FTA, 중국 FTA, EFTA FTA, 한국 FTA, 태국 FTA, 멕시코 FTA, 일본 EPA, 파나마 FTA, EU AA, 코스타리카 FTA, 태평양동맹(PA)	(협상중) 터키 FTA, Central America FTA(페루,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파나마), 엘살바도르 FTA, 터키 FTA	인도, 모로코, 인도네시아, 남아공, 러시아, 홍콩, CARICOM(카리브 공동체: 카리브해 15개국), GCC, 이집트, 브라질, 러 · 벨 · 카 관세동맹 FTA
	(타결) 과테말라 FTA, 온두라스 FTA	(협상중단) FTAA	
	(서명) CPTPP		
콜롬비아	(발효) CAN CU, G3, MERCOSUR FTA, 칠레 FTA, Northern Triangle FTA, EFTA FTA, 캐나다 FTA, 미국 TPA, EU FTA, 한국 FTA, 코스타리카 FTA, 태평양동맹(PA)	(협상중) 일본 EPA, 터키 FTA, 우루과이 FTA	중국 FTA
	(타결) 파나마 FTA, 이스라엘 FTA	(협상중단) FTAA	
MERCOSUR	(발효) CAN FTA, 볼리비아 FTA, 콜롬비아 FTA, 에콰도르 FTA, 베네수엘라 FTA, 페루 FTA, 이스라엘 FTA, 이집트 FTA	(협상중) EU FTA, SICA, 터키 FTA, EFTA FTA, 캐나다 FTA	모로코 FTA, 한국 TA, 도미니카공화국 FTA, CARICOM, 요르단, 파나마, 태평양동맹, 일본 TA, 싱가포르 FTA
	(타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	(협상중단) FTAA, GCC FTA, 멕시코 FTA	
EU	(발효) OCTs FTA, EFTA FTA, 시리아 CA, 안도라 CU, 산마리노 CU, EEA(스위스 제외한 EFTA 3개국 과 EU 28개국), 터키 CU, 이스라엘 AA, 페로제도 FT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AA, 튀니지 AA, 남아공 TDCA, 모로코 AA, 마케도니아 SAA, 요르단 AA, 칠레 AA, 레바논 AA, 이집트 AA, 알제리 AA, 알바니아 SAA, 몬테네그로 SAA,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SAA, 세르비아 SAA, 한국 FTA, 페루-콜롬비아 AA, 중미 AA, 조지아 AA, 몰도바 AA, 우크라이나 FTA, 남아프리카5개국(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EPA, 캐나다 CETA	(협상중) 태국 FTA, 말레이시아 FTA, 인도 BTIA, 인도네시아 FTA, 필리핀 FTA, MERCOSUR FTA	아제르바이잔, 브루나이, 대만, 이란, 호주, 뉴질랜드
	(협상중단) 아제르바이잔 AA, GCC FTA, 아르메니아 AA, 리비아 FTA, ASEAN FTA, 미국 TTIP	(개선협상) 멕시코 FTA	
	(타결) 싱가포르 FTA, 에콰도르 AA, 베트남 FTA, 일본 EPA		

EFTA	<p>EU FTA, 터키 FTA, 이스라엘 FTA, EEA, CEFTA(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코소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 모로코 FTA, 멕시코 FTA, 크로아티아 FTA, 마케도니아 FTA, 요르단 FTA, 싱가포르 FTA, 칠레 FTA, 튀니지 FTA, 한국 FTA, 레바논 FTA, 이집트 FTA, SACU FTA, 캐나다 FTA, 알바니아 FTA, 세르비아 FTA, 콜롬비아 FTA, 페루 FTA, 몬테네그로 FTA, 홍콩 FTA, 우크라이나 FT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GCC FTA, 중미 FTA</p>	<p>인도네시아 CEPA, 인도 FTA, 말레이시아 FTA, 베트남 FTA, MERCOSUR FTA</p>	<p>러벨카 관세동맹 FTA, 태국 FTA, 알제리 FTA, 조지아, 모리셔스, 파키스탄, 몽골, 미얀마</p>
	(타결) 과테말라 FTA, 필리핀 FTA		
호주	<p>(발효)뉴질랜드FTA, 싱가포르FTA, 미국 FAT, 태국FTA, 칠레FTA,뉴질랜드·ASEAN FTA, 말레이시아 FTA, 한국 FTA, 일본 EPA, 중국 FTA</p>	<p>(협상중)인도네시아 FTA, RCEP, 페루FTA, 태평양동맹 (PA)</p>	
	<p>(정식서명)PACER Plus(호주,뉴질랜드와 태평양제도 포럼에 속하는 14개 남태평양국)</p>	<p>(협상개조성)GCC FTA</p>	<p>FTAAP</p>
	<p>(서명)CPTPP</p>		
	<p>(타결)페루 FTA</p>		
뉴질랜드	<p>(발효) 호주 FTA, 싱가포르 CEP, 태국 CEP, PA, 중국 FTA, 호주·홍콩 CEP, 말레이시아 FTA, ASEAN FTA, 대만 ECA, 한국 FTA</p>	<p>(협상중) 인도 FTA, RCEP, 페루 FTA, 태평양동맹(PA)</p>	<p>일본 FTA, FTAAP</p>
	<p>(서명) PACER Plus(호주, 뉴질랜드와 태평양제도포럼에 속하는 14개 남태평양도서국가), CPTPP</p>	<p>(협상중단) 러벨카 관세동맹 FTA</p>	
	<p>(타결) GCC FTA</p>		

터키	(발효) EFTA FTA, EU CU, 이스라엘 FTA, 마케도니아 FTA, 크로아티아 FTA,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FTA,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FTA, 튀니지 FTA, 모로코 FTA, 시리아 AA, 이집트 FTA, 알바니아 FTA, 조지아 FTA, 몬테네그로 FTA, 세르비아 FTA, 칠레 FTA, 요르단 FTA, 한국 FTA, 모리셔스 FTA, 말레이시아 FTA	(협상중) 우크라이나 FTA, 콜롬비아 FTA, 에콰도르 FTA, 멕시코 FTA, 페루 FTA, 일본 EPA, 리비아 EPA, MERCOSUR FTA, 세이셸 FTA, 카메룬 FTA	캐나다 FTA, 인도네시아 FTA, 태국 FTA, 카타르 EPA, 인도 FTA, 베트남, 알제리, 남아공, ECO(이란,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메리카, 미국, 러시아
	(타결) 레바논 FTA, 코소보 FTA, 몰도바 FTA, Faroe Islands FTA, 가나 FTA, 싱가포르 FTA	(협상중단) GCC FTA, 콩고민주공화국 FTA	
GCC	(발효) GA FTA(범아랍자유무역지대), 레바논 FTA, 싱가포르 FTA, EFTA FTA		말레이시아, ASEAN, 요르단, 이란, 페루,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COMESA, UEMOA, 홍콩,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타결) 뉴질랜드 FTA	(협상중단) EU FTA, 터키 FTA, 파키스탄 FTA, 인도 FTA, 일본 FTA, MERCOSUR FTA, 호주 FTA, 중국 FTA, 한국 FTA	
EAEU (유라시아 경제 연합)	(발효) 베트남 FTA	EFTA FTA, 뉴질랜드 FTA, 이스라엘 FTA, 싱가포르 FTA, 인도 FTA	이집트 FTA, EU FTA, 칠레 FTA, 터키 FTA, 한국, ASEAN, 시리아, 페루, 세르비아, 이라크, 몽골
	(타결) 이란 PTA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별 FTA관련 홈페이지(2018년4월기준)

### 3) FTA의 주요 내용

FTA 체결시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원칙이다. FTA에서 상품분야의 경우, 협정의 전반부에 배치되며 협정 당사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협정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도록 효과를 유발하며, 한·칠레 FTA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6% 해당하는 수입관세를 협정 발효 10년 이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하였다.<sup>8)</sup>

우리나라의 경우 FTA 추진과정에서 1차산업 특히 농업개방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FTA 협상과정에서 민감한 주제인 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화 예외조치를 협상의 조건으로 요구해 왔다. 초대형 경제블록과의 협상이었던 한·미 FTA를 보면 쌀 또는 쌀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생산품에 대해 관세의 인하 및 철폐하기로 협정을 체결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산물 특별세이프가드(SSG)<sup>9)</sup>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 시장에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량 쿼터 도입,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계절관세 등의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표 2-4] 한·미 FTA 농산물 양허협상 결과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 제외	쌀
현행 관세, 수입쿼터	오렌지, 식용대두, 식용감자, 연유, 천연꿀
계절 관세	포도, 스낵용 감자
장기철폐, 세번분리	사과, 배
장기철폐, 세이프가드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전분
15년	호두, 쌀, 송이버섯, 표고버섯
12년	닭고기,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잎담배, 자두
6~9년	딸기, 옥수수
5년 이내	완두콩, 냉동감자, 토마토주스, 오렌지주스, 해조류, 레몬
즉시철폐	산동물, 커피, 포도주, 밀, 아몬드

자료 :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p.177.

8)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 주요내용」, 2003. p.18.

9) 세이프가드: 단기내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를 올려 무역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이다.

## 2. 한국 FTA의 개관

### 1) 한국의 FTA 체결 현황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제영토 확장을 위하여 GATT·WTO를 발판으로 하는 다자 무역체계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2004년에 칠레와의 최초의 FTA체결을 시작으로 지역무역주의에 참여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적극적인 FTA 추진전략을 사용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 협상에 임하게 된 이유는 FTA 체결을 통해서 시장경제영토 확장, 개방경제체제의 확립, 경제제도의 선진화 및 타국가들 끼리의 FTA체결로 인해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과 경제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FTA체결현황은 [표 2-5]와 같다.

[표 2-5]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발효 (15건)	칠레	1999년 12월 협상 개시, 2003년 2월 서명, 2004년 4월 발효
	싱가포르	2004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8월 서명, 2006년 3월 발효
	EFTA	2005년 1월 협상 개시, 2005년 12월 서명, 2006년 9월 발효 (*EFTA 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ASEAN	2005년 2월 협상 개시, 2006년 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2007년 6월 발효, 2007년 11월 서비스협정 서명, 2009년 5월 발효, 2009년 6월 투자협정 서명, 2009년 9월 발효 (*ASEAN 10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인도	2006년 3월 협상 개시, 2009년 8월 서명, 2010년 1월 발효
	EU	2007년 5월 협상 출범, 2009년 7월 협상 실질 타결,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 2010년 10월 6일 서명,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2015년 12월 13일 전체 발효 (2011.7.1.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 적용) (*EU 2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페루	2009년 3월 협상 개시, 2010년 8월 협상 타결, 2010년 11월 15일 가서명, 2011년 3월 21일 서명, 2011년 8월 1일 발효
	미국	2006년 6월 협상 개시, 2007년 6월 협정 서명, 2010년 12월 추가 협상 타결, 2011년 10월 22일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2011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3월 15일 발효
	터키 (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2008년 6월~2009년 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0.04~2012.03), 2012년 8월 1일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서명, 2012년 11월 22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3년 5월 1일 발효

		* 서비스·투자 협정 미발효: 서명('15.2.26), 비준동의안 국회통과('15.11.30)
	호 주	2009년 5월 한-호주 FTA 협상개시 선언, 총 7차례 협상 개최(2009.5월, 8월, 11월/ 2010.3월, 5월/ 2013.11월, 12월), 2013.12.04 협상타결 선언, 2014.02.10 가서명, 2014.04.08 공식서명,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12월 12일 발효
	캐나다	2005년 7월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05.7월, 9월, 11월/ 2006.2월, 4월, 6월, 9월, 11월/ 2007.1월, 4월, 10월, 11월/ 2008.3월/ 2013.11월), 2014.03.11 협상 타결 선언, 2014.06.12 가서명, 2014.09.23 정식서명, 2014.12.02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1월 1일 발효
	중 국	2007년 3월~2010년 5월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민감분야 처리를 위한 실무협외, 2012.05.02 협상개시 선언, 총 14차례 협상 개최(2012.5월, 7월, 8월, 10월 / 2013.4월, 7월, 9월, 11월 / 2014.1월, 3월, 5월, 7월, 9월,11월)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 2015.2.25 가서명, 2015.6.1 정식서명 2015.08.31 국회 비준동의안 상정,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20일 발효
발효 (15건)	뉴질랜드	2007년 2월~2008년 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년 6월~2010년 5월)후 잠정중단, 2013.12.03 공식협상 개시 선언, 총 5차례 협상개최(2014.2월, 3월, 6월, 8월, 10월) 2014.11.15 협상 타결 선언, 2014.12.11 가서명, 2015.03.23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20일 발효
	베트남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 선언, 총 9차례 협상 개최(2012.9월 / 2013.5월, 10월 / 2014.3월, 5월, 7~8월, 9~10월, 11월, 12월), 2014.12.10 협상 타결 선언, 2015.03.28 가서명, 2015.05.05 정식서명, 2015.11.30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015년 12월 20일 발효
	콜롬비아	2009년 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2009.12월 / 2010.3월, 6월, 10월 / 2011.10월 / 2012.4월), 2012.06.25 협상 타결 선언, 2012.08.31일 한-콜롬비아 FTA 가서명, 2013.02.21 한-콜롬비아 FTA 정식 서명, 2016년 7월 15일 발효
타결 (1건)	중 미 (5개국)	2010.10월 공동연구 개시, 20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2015.6월 한중미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015.7월 한중미FTA 예비협외 총 7차례 협상 개최(2015.9월, 11월/ 2016.2월, 5월, 8월, 9월, 10월) 2016.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7년 3월 10일 가서명 2018년 2월 21일 정식서명 (*중미 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나카라과
협상 진행 (9건)	한중일	2003년~2009년 민간공동연구, 2010.5월~20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 “연내 협상개시 목표” 합의, 2012년 11월20일 협상개시 선언 총 13차례 공식협상 개최(2013.3월, 7월~8월, 11월/ 2014.3월, 9월/ 2015.1월, 5월, 9월/ 2016.1월, 6월/ 2017.1월, 4월/ 2018년 3월)

		총 5차례 실무협상 개최(2014.11월/ 2015.4월, 7월, 12월/ 2016.4월 2011.11월 ASEAN이 RCEP 작업계획 제시, 2012년 11월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총 22차례 협상 개최(2013.5월, 9월/ 2014.1월, 3~4월, 6월, 12월/ 2015.2월, 6월, 8월, 10월/ 2016.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2017.1 월, 5월, 7월, 10월/ 2018.2월, 5월) (*RCEP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ASEAN)
	RCEP	
	에콰도르 SECA	2012.4월 통상교섭본부장 에콰도르 통상차관 면담 계기, 타당성연구 진행 합의 2012.9월~2013.6월 민간공동연구 실시 2015.2월 한·에콰도르 TA 추진가능성 검토 회의 4월 한·에콰도르 TA 추진 관련 대국민 공청회 8월25일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 선언(서울), 12월 예비협 의 개최 (뉴욕) 총 5차례 협상 개최(2016.1월, 3월, 8월, 10월, 11월)
	이스라엘	20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2010.8월 완료 2016.5월 한·이스라엘 FTA 협상개시 합의 6차례 협상개최(2016.6월, 12월/ 2017.3월, 4월, 5월/ 2018.3월
협상 진행 (9건)	한·ASEAN 추가자유화	2017.8월 제16차 이행위원회 개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7.12월 제4차 협상 개최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6.11월 개선협상 개시 선언
	한·미 FTA 개정	3차례 개정협상 개최(2018.1월, 2월, 3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2018.3월 제1차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개최
협상 재개, 여건 조성 (4건)	멕시코	20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 2008년 6월 제2 차 협상 개최, 2016.11월 멕시코와 통상차관 회담 계기 예비협 의 개최합 의
	GCC	2008년 7월 협상 개시, 2009년 7월 제3차 협상 개최 후 중단 (*GCC 6개국: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MERCOSUR	2017.3월 예비협 의 완료 및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문 서명 2017.4월 공청회 개최 2017년 12월 신속한 협상개시 중요성에 합의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EAEU	2016.8월 민간공동연구 완료 3차례 한·EAEU 정부간 협의회 개최(2016년 10월, 11월/ 2017.4월), 2017.9월 한러정상회담계기 FTA협의를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EAEU: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자료: 외교통상부 ([www.fta.go.kr](http://www.fta.go.kr)) 2018년 4월 기준

2003년 9월 발표된 ‘FTA 추진 로드맵’ 에서 우리 정부는 상품관세 철폐,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단계별 추진대상국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였고 단기간 내 FTA 체결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실행했다.<sup>10)</sup>

2018년 1월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터키(기본협정, 상품무역협정),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와의 총 15건의 FTA를 발효 중이고, 한-중-일, RCEP, 에콰도르SECA, 이스라엘, ASEAN, 인도 CEPA(개선), 칠레(개선), 미국(개정), 중국(서비스 투자협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멕시코, GCC, MERCOSUR, EAEU과는 공동연구 단계에 있다.

## 2) 한국의 FTA 체결 성과

한국이 최초로 맺은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후 10여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14개의 FTA가 더 발효 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체결한 FTA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FTA 발효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먼저 한·칠레 FTA의 경우 발효 1년이 경과한 2005년에는 전년 대비 對칠레 수출액이 62.51% 증가했고 발효 후 2년이 지난 2006년에는 전년 대비 36.07%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발효 1년 경과한 2007년에 전년 대비 25.93%, 2년 경과한 2008년에는 전년 대비 36.35% 증가했다. 한·칠레 FTA와 한·싱가포르 FTA는 체결이후에 수출액 증가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한·EFTA FTA와 한·ASEAN FTA 의 경우 발효 후 수출액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것은 FTA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부분이 있다. 2008년에 전 세계를 휩쓴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 불황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FTA발효 1년이 경과한 해에 6%, 2년차에 13.3%의 수출 성장이 있었다. FTA의 발효로 수출의 증가는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호주는 1년차에 5%의 성장을 보이다가 2년차에 수출액이 30%감소하였다. 중국은 1년차에 9%의 수출감소를 보이다가 2년차에 14.2%의 수출증가로 돌아섰다. 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THAAD)에 따른 무역보복에도 불구하고 FTA체결로 인해 수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베트남은 FTA체결이후 1년차에 17.5%, 2년차에 46.3%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p.123.

[표 2-6] 주요국 FTA 발효 전·후 수출액 비교

국 가	발효1년전	발효년도	발효후1년		발효후2년	
	수출액(US\$)	수출액(US\$)	수출액(US\$)	증감률(%)	수출액(US\$)	증감률(%)
칠레	517,186,968	708,286,570	1,151,001,104	62.51	1,566,130,894	36.07
싱가포르	7,406,634,297	9,489,299,810	11,949,490,949	25.93	16,292,971,236	36.35
스위스	576,042,348	840,244,708	483,803,579	-42.42	399,058,317	-17.52
노르웨이	468,312,923	850,524,115	596,278,275	-29.89	2,079,816,468	248.8
아이슬란드	42,416,217	35,646,835	38,391,640	7.7	38,704,848	0.82
리히텐슈타인	3,595,387	3,825,101	4,212,805	10.14	3,589,458	-14.8
인도네시아	4,873,522,765	5,770,618,452	7,933,617,062	37.48	5,999,880,115	-24.37
말레이시아	5,227,177,747	5,704,247,923	5,794,490,751	1.58	4,324,821,854	-25.36
미얀마	121,310,644	291,981,026	243,814,947	-16.5	406,153,456	66.58
태 국*	4,246,113	4,488,400	5,779,104	28.8	4,528,169	-21.6
미 국	56,207,703	58,524,559	62,052,488	6.0	70,284,872	13.3
호 주	9,563,090	10,282,512	10,830,635	5.3	7,500,743	-30.7
캐나다	5,202,855	4,916,629	4,623,244	-6.0	4,884,917	5.7
중 국	145,287,701	137,123,934	124,432,941	-9.3	142,120,000	14.2
뉴질랜드	1,730,305	1,262,746	1,305,120	3.4	1,305,768	0.0
베트남	22,351,690	27,770,750	32,630,457	17.5	47,753,839	46.3
콜롬비아**	1,128,951	853,196	813,718	-4.6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www.customs.go.kr)자료 편집

\*: 태국은 2010년에 발효했으나 한·ASEAN FTA 상품분야 첫 발효가 2007년 이므로 2007년 기준으로 작성

\*\*: 콜롬비아는 발효년도가 2016년도임, 2년차 수출금액은 자료없음.

### 3. 한국의 원산지규정

#### 1) 원산지규정의 개요

제품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라 함은 제품의 국적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그 제품이 생산·제조·가공된 국가를 의미하고 동식물은 출생 및 사육한 국가를 말한다. 원산지는 대체로 물품의 원재료를 공급한 국가 또는 주요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또는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에 사용되는 개념이다.<sup>11)</sup>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혹은 원산지제도는 물품의 원산지 국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국제법규, 법률, 규정, 판례 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적용되는 행정적인 판정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원산지규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여 특혜 또는 비특혜 무역조치의 적용여부를 판단한다.<sup>12)</sup>

국제적인 기준의 원산지 규정은 WTO 통일원산지규정에서 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1994년 UR협상의 결과로 “WTO설립협정”이 제정되고 이 협정의 부속서에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이 포함되었다. 1995년 5월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 산하 원산지규정기술위원회(TCRO: Technical Committee on Rules of Origin)는 HS품목분류 4단위를 기준으로 총 1,241개 품목에 대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총 486개에 대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WTO 통일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이 제정되었다.<sup>13)</sup> 통일원산지규정이 제정되면서 상계관세, 관세할당, 반덤핑, 원산지 표시, 세이프가드, 무역통계 등 모든 무역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원산지 규정은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나뉜다.

첫째, 특혜원산지규정은 EU(유럽연합) 혹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같은 특정 국가사이에서 특혜관세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협정이나 GSP<sup>14)</sup>나 GSTP<sup>15)</sup>와

11) 윤영호, FTA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2010, p79

12)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의정서(개정교토의정서) 특별부속서K 제1장 정의E1,E2

13)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p.25.

14)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물, 공산품의 제품 및 반제품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거나 최혜국세율보다도 저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특혜대우를 하는 제도이다. 개발도상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15) 범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 1976년 개도국간에 특혜무역창설이 논의된 후 1988년 4월 유고슬라비아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GATT 등에서 추진돼 온 동경라운드 등이 선진국 중심의 국제무역 질서임에 반해 범개도국간 무역질서와 교역촉진을 위한 남남협력협의체라는데 의의가 있다.

같이 개발도상국에 특혜를 줄 때에 이용되며, 이러한 협정을 맺은 역내국가가 비협정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을 때 이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또한 역외국가의 물품이 역내국간에 주어지는 특혜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정 마다 까다로운 원산지규정을 두고 있다.<sup>16)</sup>

둘째, 비특혜원산지규정은 제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을 실시할 경우에 물품의 원산지 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더불어 관세쿼터, 원산지 표시제도, 정부 조달 등에서도 원산지 규정이 사용되며, 무역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도 원산지규정 적용 여부는 중요하다.

비특혜원산지규정의 대표적인 WTO 원산지규정은 세계의 모든 WTO회원국에게 공통 적용되며, 이는 FTA 협약국간에만 적용되는 특혜원산지규정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 개발 아젠다)<sup>17)</sup> 협상보다 양자간 협상인 FTA의 체결에 관심을 가지고 확대되고 있어 특혜원산지규정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혜원산지규정은 협정국간의 무역의 영토를 넓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정 체결국가의 상품에 혜택을 부여하며, 그 혜택을 받는 나라를 명확하게 판별하여 비협정국과의 차별을 두고자 한다.

제품의 생산 활동이 여러 나라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 되고, 다국적기업의 대두와 IT기술, 운송수단, 통신설비의 발전에 따라 기업 경영 환경이 변화하였다. 한 국가에서 온전하게 생산된 농·수·축산물 등의 경우 원산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면, 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재료, 부분품을 가지고 다른 국가에서 가공된 공산품의 경우에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이다. 물품의 원산지 결정이 어려워진 여건 때문에 특정기준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원산지규정 제도의 본래의 목적은 무역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지만 원산지 결정 여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절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16) 조미진·여지나·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12.

17) 2001년 11월, 카타르의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다자간 무역 협상.

## 2) 한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 (1)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에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과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ly Transformation) 크게 두 가지로 분류 할 수 있다.<sup>18)</sup> 완전생산기준은 해당 제품의 전부를 생산·가공 또는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주로 가공하지 아니한 농수축산물이나 광물 등 1차산품이 이에 해당되고 자국산 원재료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도 포함된다.

완전생산기준과 달리 해당 제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해당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와 국산 원재료를 혼용하여 물품을 가공·생산할 경우 이 기준이 적용되며, 대부분의 공산품이 여기에 해당된다.<sup>19)</sup>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C: Value Content), 특정공정기준(SP: Specific Process)의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sup>20)</sup> 하지만 각 기준 중에 하나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같이 사용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이용되며, 이 중 부가가치기준 기준을 적용할 때에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수입산 함량(MC: Import Content), 국내산 함량(DC: Domestic Content) 또는 역내부가가치 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부품가액(VP: Value of Parts) 등이 있다.<sup>21)</sup>

실질변경기준을 보완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보충 기준에는 미소기준(de minimis rule), 누적기준(cumulation rule),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불인정공정(insufficient operations), 세번변경기준특례, 부속품 및 예비부품, 역외가공인정(outward processing), 재수입제품, 대체가능제품(fungible goods), 직접운송법칙(direct consignment) 등이 있다.

18)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2003, p.44.

19) 윤영호, 전게서, p123

20)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전게서, p.26.

21)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FTA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31.

[표 2-7] 원산지 결정기준 구조

원산지 결정기준			설 명
완전생산기준			제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
실질변형 기준	세번변경기준		HS 품목분류 세번이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 기준	수입산함량	일정한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에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내산함량	
		부품가액	
특정공정기준		특정한 공정을 수행한 경우	
보충기준	미소기준		일정 수준 이하의 재료에 의한 세번변경을 불인정
	누적기준		협약 상대국 재료를 사용한 경우
	롤업원칙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재료로 인정
	불인정공정		단순·경미한 가공만 거친 경우 원산지 불인정
	대체가능물품		동종 동질 제품으로 대체하여 원산지로 인정하여 주는 경우
	부속품, 예비부분품		본체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결정시에 고려하지 않음
	직접운송원칙		원산지국에서 직접 운송된 경우에만 그 제품의 원산지로 인정

(2) 완전생산기준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은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경우는 천연상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채취, 수확하거나 동·식물을 발육시킨 경우와 이러한 원자재를 기초로 새로운 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가 있다. 또한 완전생산기준은 영토 내에서 생산된 물품 외에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된 물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적선에 의해 원양에서 어업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물품에 대해서도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로 판단한다.

원산지기준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한 교토협약이다. 교토협약은 1974년 현 세계관세기구의 전신인 관세협력이사회(CCC)에서 체결된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1999년 6월 현재와 같이 개정되었다. 한국은 2003년 2월에 가입하였으며 2006년 2월에 발효되었다.<sup>22)</sup>

교토협약의 원산지기준 중 완전생산기준은 [표 2-8]과 같다.

[표 2-8] 교토협약의 완전생산기준

구분	완전생산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1차 물품 관련	① 당해 국가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된 광물성 생산품 ② 당해 국가에서 수확 되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③ 당해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④ 당해 국가에서 산 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⑤ 당해 국가에서 행해진 수렵 또는 어로로부터 얻은 생산품 ⑥ 당해 국가의 선박이 해양어업에 의하여 획득한 생산품 및 해양에서 취득한 기타의 생산품 ⑦ 당해 국가의 영해외 해저의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된 생산품 (다만, 당해 국가가 그 토양 또는 하층을 이용할 독점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2차 물품 관련	⑧ 상기 ⑥항이 정하는 종류의 생산품만을 가지고 당해 국적의 공장선(工場船)상에서 얻어진 생산품 ⑨ 제조 및 가공작업에서 생긴 부산물과 폐기물, 그리고 중고품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수집되고 원자재의 회수에만 적합한 것 ⑩ 당해 국가에서 상기 ①내지 ⑨항에 언급된 생산품에 의해서만 생산된 물품

자료: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2008, p. 31.

완전생산기준은 실질적으로 농수축산업과 광업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이지만, 전 세계를 경제영토로 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원재료 조달과 생산기지를 자국에 두지 않는 형태를 고려할 때 그 적용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통적으로 모든 FTA에서 수산물의 경우에 자국산 선박이 획득하였다면 영해 밖 공해상에서 취득한 수산물이나 선상가공품에 대해서도 이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자국선 선박에 대한 인정 기준에 있어서는 한·EFTA FTA의 경우 기국요건(선박에 국기를 게양하는 조건 : 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만 충족하면 되며, 다른 FTA에서는 기국조건 외에도 등록요건(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 p. 31.

### (3) 실질적 변형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은 어떤 물품의 생산이 2개국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원산지를 실질적인 변형이 어느 국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실질적 변형은 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의 과정을 통해서 당초의 원료의 성질을 물리적·화학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물품의 형태와 생산 과정의 특징에 따라서 실질적 변형기준은 세 가지로 나뉜다.

[표 2-9] 실질적 변형기준의 종류

기 준	특 징
세번변경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S 품목표상의 관세분류 변경에 의한 방식</li> <li>- 생산품과 사용원재료에 적용되는 관세분류가 다를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li>- 관세분류의 변경이 실질적 변경 등에 있어서 결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음</li> </ul>
부가가치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격비율에 의한 방식</li> <li>- 추가된 제조 또는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가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ul>
특정공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작업 또는 가공작업표에 의한 방식</li> <li>- 충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제조작업 또는 가공이 행해진 경우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인정</li> </ul>

자료: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FTA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p.31.

#### ①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은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준으로 원재료와 제품의 HS품목분류 변경 여부를 기초로 원산지를 결정하므로 원산지 결정을 명확하고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품목분류 변경은 HS 2단위, 4단위, 6단위 기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HS 2단위 세번변경이 HS 4단위 세번변경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이 되고, HS 4단위 세번변경이 HS 6단위 세번변경보다 더 제한적인 기준이 된다. 또한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요건이나 특정공정기준이 추가될 경우 원산지 기준은 더욱 제한적이게 된다.<sup>23)</sup> 한국의 경우 경쟁력이 있는 공산품등은 4단위나 6단위 세번변경이 대부분이고 농수산물은 2단위 세번변경을 주로 이용한다. HS는 대체적으로 물품을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배열은 주로 순차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23)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12.

HS 51류에서는 면의 섬유에서 실, 원단 순으로 분류되어 있고 가공공정이 진행될 때 마다 HS번호가 변화되고 결국 HS번호의 최종 변경을 가한 공정이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제조공정이 된다. 하지만 완성품과 부분품을 같은 HS에 분류하는 경우에는 부분품을 완성품으로 제조하는 공정을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원산지 판정이 어려워진다. 이는 HS품목분류가 상품의 품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지 원산지규정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제 무역에서 HS품목분류는 모든 상품을 가장 체계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므로 세번변경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 규정에 적용하고 있다.

## ②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Rules)은 상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일정한 비율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는 기준이다. 2개국 이상에 걸쳐서 가공공정이 진행된 경우에는 보통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가 원산지국이 된다. 부가가치기준에서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세부기준으로는 수입산 함량(MC : import content), 국내산 함량(DC : domestic content) 그리고 부품가액(VP : Value of part)이 있다. 일부 FTA에서는 협정국내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원산지로 인정하는 역내부가가치비율기준(RVC : regional value content)도 있다.<sup>24)</sup>

수입산 함량 기준은 최종생산품의 가격 중 허용 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부가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국내산 함량 기준에는 공제법(build down method)과 직접법(build up method)이 이용된다. 공제법은 제품의 조정가격에서 역외산 재료의 가격을 공제하여 구하는 방식이며, 직접법은 완제품의 조정가격에서 국내산 재료의 비중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다.<sup>25)</sup>

부가가치기준은 상품에서 원산지국이 부가한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산출이 알기 쉽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평가 한다. 하지만 환율이나 물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유동적이고, 기업의 원가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원산지 판단 기준이지만 기업이 사용을 꺼

24) 최홍석, "FTA상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48.

25) 채형복·황해륙, "한·EU FTA 원산지규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pp.611-612.

려하고 있어 예외적인 규정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FTA 부가가치기준은 산정방법으로 한·EFTA FTA와 한·EU FTA에서 수입산함량기준(MC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FTA에서는 역내산함량기준의 공제법 내지 직접법을 사용한다. 부가가치 비율의 요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30%에서 최대 60%정도이고 특정품목에 있어서는 80%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부가가치의 계산은 기준가격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 현재 한·EFTA FTA와 한·EU FTA에서는 EXW가격을 사용하며 나머지 FTA에서는 FOB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비율의 계산은 역내 추가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원재료를 수입해서 역내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거친 중간재를 사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이 중간재의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중간재 등이 역내산으로 인정받는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재 가격 전체를 비원산지 재료 가격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다.<sup>26)</sup>

### ③ 특정공정기준

특정공정기준(Specific Manufacturing)은 각 제품의 생산공정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제품의 주요한 특성을 발생시키는 제조가공 작업을 진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FTA의 특정공정기준은 직물과 의류, 방직용 섬유제품에 한하여 재단·편직·봉제·조립 등의 주요 공정을 역내국에서 수행할 것을 적용하고 있다. 의류제품에 있어서는 한·칠레 FTA에서는 역내원단을 사용하여 재단·봉제를 하여야 하고, 한·싱가포르 FTA와 한·EFTA FTA에서는 재단·봉제를 하여야 원산지로 인정된다. 한·ASEAN FTA에서는 특정공정기준외에도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한·EU FTA와 한·인도 CEPA에서는 직물기준(Fabric Forward Rule)<sup>27)</sup>을 채택하고 있고, 한·미 FTA에서는 원사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직물에 있어서는 한·EFTA FTA와 한·ASEAN FTA에서 염색 또는 날염공정을 거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

26)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전계서, p.66.

27) 한·미 FTA의 원사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역내산 직물 사용을 말한다. 2단계의 공정을 거치면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변형기준이라고도 한다.

정하고 있다. 다만 수입한 생지(生紙)의 가격이 제품가격의 각각 50%와 40% 이하일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표 2-10] 실질적 변형기준의 장단점 비교

기준	장점	단점
세번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결정조건이 기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예측 가능함</li> <li>-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과 예측가능성이 높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세분류에 맞추어 품목작성 곤란</li> <li>- 분류품목은 기술적 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최신의 것으로 경신할 필요가 있음</li> <li>- 수출입국 양쪽에서 동일한 품목표를 작성할 필요</li> </ul>
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이 정확하고 단순</li> <li>- 상업상의 기록 또는 서류 등에 의해 원산지의 입증 및 결정이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치의 경계선에 있을 경우 문제 발생</li> <li>- 원재료의 시장가격 및 환율의 변동에 의해 원산지 지위 좌우</li> <li>- 수출입국간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제조비나 총경비 등 요소 구성과 해석에 있어 불일치 가능성</li> <li>-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기업들에게 서류 제출부담 및 이행비용이 있고 사후검증에 많은 행정비용 소요</li> </ul>
특정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결정을 위한 조건이 정확하고 객관적</li> <li>- 제조자가 변형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의 입증이 일반적으로 용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정받는 가공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해야 하고 작성이 곤란</li> <li>- 예외품목의 표 작성이 곤란하고 동시에 기술진보, 경제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수시로 개정할 필요</li> </ul>

#### (4) 보충기준

HS 품목분류를 이용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HS 자체가 원산지 기준 적용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도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충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①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은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해당 상품이 수출당사국을 출발하여 중간에 별도의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수입당사국으로 운송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원칙이다. 다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환적한 경우에는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되며, 환적과정에서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외의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환적과정만 거친 경우에도 상품이 환적국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서면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미소기준

미소기준(De minimis or Tolerance Rule)은 최소허용기준이라고도 한다. 허용 가능 최소 또는 의무 면제의 뜻을 지니고 있으며,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미미한 금액 또는 수량의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여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다. 수입재료의 비율이 극히 적을 경우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획일적인 세번변경기준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기준이다.<sup>28)</sup> 한국 FTA의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대체적으로 당해 물품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당해물품 가격의 10% 이하이면 가능하다. 다만, 섬유제품의 경우 중량기준으로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며, 농수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미소기준에 더하여 세번변경까지 있는 경우에 원산지로 인정하고 있다.

### ③ 불인정공정기준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이란 어떤 물품이 완전생산기준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단순한 작업이나 가공을 거쳐서 생산된 상품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불인정공정기준이 사용되는 이유는 HS분류체계에서는 단순히 냉동시키거나 분쇄하거나 혼합하는 등의 작업만으로도 세번변경될 수 있어 이러한 세번변경기준이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상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번변경기준이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

28) 윤영호, 전계서, p182

#### ④ 누적기준

누적기준(Accumulation or Cumulation)은 국내산이 아닌 FTA협약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 그 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이다. 예를 들어서 한·ASEAN FTA에서 한국산 재료와 베트남산 재료를 동시에 사용하여 디지털 TV를 한국에서 생산했다면 같은 ASEAN FTA협약국인 태국으로 수출시 특혜관세를 부여하게 된다.

현재 적용되는 누적기준 형태로는 양자간 누적(Bilateral Cumulation), 완전 누적(Full Cumulation),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등 세 가지가 있다.<sup>29)</sup> 양자간 누적은 양자간 FTA 협정국 사이에서만 누적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완전누적은 복수 국가간 FTA에서 적용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사누적은 협정국이 아닌 국가들에 의해 공급된 재료도 일정 조건하에 역내산으로 간주한다. 한국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간 누적을 적용하고 다자간 협정인 한·EFTA FTA, 한·ASEAN FTA, 한·EU FTA에서는 역내산 원부자재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도입되었다.

#### ⑤ 롤업원칙

롤업원칙(Roll-up Principle) 또는 흡수원칙(Absorption Principle)은 비원산지의 중간재가 일정한 가공조건을 만족시켜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고 또 최종 상품에 사용되면 해당 재료를 역내산으로 간주하는 것이다.<sup>30)</sup> 반대로 역외산 재료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에 투입하였으나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면 여기에 투입된 재료와 중간재도 역내산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방식을 롤다운(Roll-down) 원칙이라고 한다. 현재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ASEAN 에서 롤업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 ⑥ 대체가능물품

동종동질의 곡물·원유·가스과 같이 물품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여 원산지가 서로 다르더라도 상업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대체가능물품(Fungible Goods)이라 한다. 대체가능한 물품이 서로 혼합되어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원산지 결정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원유저장소의 원유가 액체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그 원유의 원산지 판정은 원산지국이 다

29) 고준성, 전계서, p.56.

30) 김환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전계서, p.81.

르다 하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장부에 따라 원산지 판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 ⑦ 간접재료

상품의 생산·검사 과정에 사용되지만, 그 상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물품 또는 설비·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를 간접재료(Indirect Materials)라 한다. 생산용 재료에는 연료, 촉매제, 에너지, 공구, 용해제, 주형, 작업복, 윤활유 등이 있으며, 시험용 재료는 물품의 시험 및 검사용 설비, 장치, 소모품 등이 있고, 설비용 재료는 설비, 건물 유지 보수용 부품, 재료가 있고 그 외 생산에 사용된 그 밖의 재료로서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재료 등이 포함된다.

원산지를 결정할 때 간접재료는 재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기준 적용 시에 간접재료비는 재료비에 포함하지 않고 제조경비로 처리한다. 다만, 한·칠레 FTA에서는 실제 원산지가 어디든간에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번변경기준 적용 시에는 무시하고 결정한다.

#### ⑧ 부속품·예비부품·공구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본 상품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와 같이 판매되는 마우스는 본 상품인 컴퓨터의 원산지를 적용한다. 그러나 부속품 등을 별도로 수입하거나 통상의 인정되는 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⑨ 세트상품

서로 다른 HS에 분류될 수 있는 상품을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을 세트물품이라고 하며, 세트물품에 해당되면 그 세트 구성품 각각이 모두 원산지상품인 경우에 세트 전체를 원산지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비원산지상품의 경우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한다.

#### ⑩ 역외가공 인정제도

역외가공인정제도(Outward Processing)란 FTA 협정국 역내에서 반제품을 생산

한 후 이를 수출하여 제3국에서 가공하고 다시 해당 국가 내로 재수입하여 제품을 완성한 후 이를 타 협정국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한국이 체결한 FTA에서는 한·싱가포르, 한·EFTA, 한·ASEAN에서 도입하고 있다.

역외가공 인정제도에는 제한 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인정하는 일반적 역외가공기준과 HS 6단위 또는 10단위 기준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으로 구분되어 진다. 일반적 역외가공기준은 한·EFTA에서만 적용되며 제한적 역외가공기준은 사실상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특례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와 한·EU FTA 에서는 개성공단 등의 역외가공지역(OPZ : Outward Processing Zone)을 지정할 수 있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 하였다. 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은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 받으며, 개성공단 외 다른 북한 내 지역도 지정 가능하다<sup>31)</sup>.

---

31)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전계서, p.87.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원산지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원산지 규칙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고 기업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운영 및 방안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으로 인한 FTA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도 있다. 다음은 원산지 관련 선행연구들의 개괄적인 내용이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제시한다.

최준(2015)은 “제주지역 FTA 원산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주지역이 FTA로 인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 대표적인 FTA 피해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1차산업에 대해 FTA원산지관리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조력하는 일과 제주지역 이슈에 맞는 적절한 FTA 대응정책 개발을 통해 FTA 일방적인 수혜군과 차이를 완화시켜주고 무게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덕철·강승진(2009)은 “섬지역의 산업·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에서는 FTA 및 완전한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제주와 문화적여건, 환경적 여건, 특히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오키나와의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지영·이중화(2015)는 “제주 가공식품의 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제주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시장에 제주가공 식품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설문조사와 실증조사를 하였다. 중국의 시장은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이를 제대로 분석하고 중국 소비시장에 진출하면 제주 농식품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유정(2017)은 “한국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서 한국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이것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나아가 한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제고를 위한 원산지관리역량강화 필요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산지 관리역량에 대해 원산지 규정 이해도, 원산지정보

신뢰도, 원산지 규정 관리정도, 원산지 관리시스템 활용도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한국 수출기업의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1,3번의 가설은 채택이 되었고, 2,4번의 가설은 기각이 되었다.

김창봉,정재우,남윤미,서승아(2018)는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산지제도 관리역량이 원산지 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원산지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범주에서 이해도, 시스템, 활용 수준 요인이 실제 원산지 운용 성과와 어떠한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측면에서 기획하였다. 또한 기업규모별로 원산지관리역량범주 요인이 실제 원산지 운용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업규모별 원산지 운용 성과를 확인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서 수출기업의 원산지사후검증 수준의 평가 요인들을 도출하고,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응답자들을 통계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김시라·김은미(2017)는 “우리나라 FTA 정책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넛지기법을 중심으로”의 연구를 통해 행동경제학에 기반한 선택설계인 넛지(Nudge)가 정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FTA에 대한 국내중소기업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정책 확산의 넛지전략을 제시하였다. 넛지이론에 근거하여 넛지디자인을 크게 네가지로 구분하였다. 국내에서 전무했던 행동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정책활용의 넛지전략을 국내 FTA 정책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넛지기법과 문제점을 일대일로 대응시키지 않고 일대다수로 전략을 제시한 결과 FTA 활용상의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단순화시켰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강명신(2014)은 “한국 FTA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에서 2014년 현재 한국 정부와 유관기관의 FTA 지원정책 현황, 특히 FTA 특혜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한국 중소기업이 FTA 활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실증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결론 도출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김지희(2017)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한 중소기업 사례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기업에서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작성 및 추출하고, 시스템에 등록할 때 어떠한 문제로 인

해 실행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국내 수출기업 중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직접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층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업들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원산지관리시스템 실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원산지관리시스템 문제점에 대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업에서의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도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나 원산지관리시스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다.

박준현(2014)은 “FTA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결정기준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FTA 원산지규정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이 꾸준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지원과 원산지 증명 간소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석규(2015)는 “우리나라 FTA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점을 찾아보고 향후 추진될 FTA 협상에서의 긍정적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한국수출기업 입장에서 원산지증명제도의 협정별 통일된 제도와 서식 사용 그리고 간소화는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되긴 위해서 수입국 당사자와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사항이라 한국정부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음을 간과하였다.

신동현(2015)은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 통관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발전적 대안을 찾고자 했다. 원산지제도를 실제 수출입 현장에서 실현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행정절차에 중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협소한 분량의 자료만으로 원산지제도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한 것에 한계가 있으며 수출입통계나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해 더욱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정환(2011)은 “물품무역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일반적인 이해와 원산지제도의 결정 기준 그리고 원산지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절차와 내용 인식과 각 규정의 취지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FTA원산지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적절한 활용을 하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홍길중,정진구(2016)는 “화장품 산업의 품목별 원산지제도 분석을 통한 FTA 활용 전략”의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효과적인 FTA 활용을 위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 분석이 아닌 화장품의 품목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광현, 방성철(2015)은 “국내원산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국내 법령별 상이한 원산지표시제도와 판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의 실현을 위하여 무역업자 및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하였고, 원산지판정제도와 관련하여 수입 물품과 수출물품에 대해 각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산지표시제도와 판정제도에 국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합리적인 원산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상진,김무한,김형철(2014)은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분석을 통한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활용전략을 제시하여 FTA의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체결국과 합의되어 있는 FTA 원산지규정을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원산지규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너무 원론적인 제시를 하였고 현장대응력이 필요한 연구이다.

박홍규(2015)는 “FTA 원산지제도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쟁점사례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법률적 문제점들을 사례별로 심층 분석하여 쟁점사항들을 파악하고 FTA가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법률적 불복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쟁점들을 분석하였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창봉, 임덕환(2011)은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의 관계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여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 등의 요인들이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이지수(2015)는 “원산지사후 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FTA활용에 대한 관세행정의 영향을 FTA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문을 통해 정량화하여 선행 연구결과를 정량적인 측면에서 보완하고 정량적 자료에 기반한 기존 이론은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업의 FTA 활용이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은 얻었다. 기업과 관세행정기관에 요구되는 지원과 개선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박철구, 최장우(2013)는 “원산지 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원산지정보의 생성과 유통, 그리고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EU와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양박(2015)은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에서 한국과 중국이 기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규정의 차이점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이 가서명한 FTA 원산지규정에 대하여 검토하고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기 체결한 원산지 규정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으며 또한 한·중 FTA에서의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한·중 양국 정부는 양국의 무역이익을 최대화하고 무역분쟁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고 수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이진(2017)은 “한·중 FTA 원산지 규정의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에서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적 체계와 구성을 통하여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원산지규정 관련 내용들이 체결된 FTA들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는 중국의 원산지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 환(2017)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중 수출 물동량의 비료 분석 연구”를 통해 경제 글로벌화와 지역경제 블록화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의 특성, 구조, 발전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한·중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원산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원산지활용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연구들을 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면접조사를 통해 제주지역의 영세소규모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원산지제도를 활용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표 2-11]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최준(2015)	제주지역 FTA 원산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함. 대표적인 FTA 피해지역군인 제주현실에 맞는 대책마련 요구하였다.
오덕철외(2009)	섬지역 산업, 경제에 미치는 분석을 유사한 환경의 오키나와의 사례를 분석하여 벤치마킹 하였다.
정지영외(2015)	제주의 가공식품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중국의 복잡한 환경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유정(2017)	한국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연구하였다.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김창봉외(2018)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산지제도 관리역량이 원산지 운영성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김시라외(2017)	넛지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FTA정책활용 재고방안을 연구하였다.
강명신(2014)	한국정부와 유관기관의 FTA 지원정책 현황, 특히 관세특혜를 위한 원산지증명 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김기희(2017)	원산지시스템을 구축한 중소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FTA 원산지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증진 방안을 연구하였다.
박준현(2014)	FTA 체제하에서 수출기업의 원산지결정기준 활용전략에 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김석규(2015)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FTA 협정별 원산지증명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했다.
신동현(2015)	원산지 증명과 세관의 확인 그리고 원산지표시 등 절차적 규정의 발전적 방안을 찾아보고자 했다.
김정환(2011)	FTA특혜관세제도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FTA 특혜원산지제도 입법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은 제시하였다.
정진구외(2016)	화장품산업의 품목별 원산지제도 분석을 통해 원자재 구매와 완제품, 원자재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FTA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유광현외(2015)	국내에서 법령이 상이한 원산지표시제도와 판정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검토하고 무역업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반영한 원산지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진외(2014)	FTA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수출증대를 위한 활용전략을 제시하여 FTA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였다.
박홍규(2015)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김창봉외(2011)	기업들이 원산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원산지제도 활용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지수(2015)	원산지 사후 검증이 FTA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기업의 FTA활용과 관세 행정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박철구외(2013)	EU와 미국을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양박(2015)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규정의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차이진(2017)	한·중FTA 원산지결정기준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원산지규정 관련 내용들이 체결된 FTA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중국의 원산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p>선행연구와의 차이 : 선행연구에서는 원산지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원산지활용에 미치는 직, 간접적인 연구들을 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의 영세소규모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를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특히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해 원산지제도를 활용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p>	

### 제 3 장 제주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 제1절 제주 지역의 경제 및 수출현황

##### 1. 제주지역 일반현황 및 산업구조 현황

제주도는 우리나라 전국토의 1.9%인 1,849.3Km<sup>2</sup>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 총생산액은 2016년도 기준 16조9105억원으로 전국 총생산의 약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는 2012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현재 678,772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5,145만명의 약 1.5%의 인구비율을 차지한다. 서울을 제외하고 세종시와 더불어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고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인구와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에 불과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전체적으로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하지만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경제 및 수출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경제규모를 분석하고 수출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표 3-1] 제주지역 기본 현황

구 분	합 계		
	인 구		
	계	남	여
2012	592,449	297,344	295,105
2013	604,670	303,815	300,855
2014	621,550	312,701	308,849
2015	641,355	322,954	318,401
2016	661,190	333,340	327,850
2017	678,772	342,741	336,031
면적	1,849.3Km <sup>2</sup>		전국토의 1.9%
지역 총생산	16조 9105억원		우리나라의 1% 2016년말 기준

자료 :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제주도의 산업구조는 농림어업이 11.6%, 광제조업인 3.4%, 건설업이 10.2%, 전기 가스수도 3.4%. 서비스업이 71.5%이다.<sup>32)</sup> 주로 3차 산업인 관광,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농·수·축산업 등 1차 산업 비중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2차 산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의 27.8%인데 제주도의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6%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상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FTA를 적극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위와 같은 산업구조는 우리나라가 FTA체결로 인해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FTA의 체결이 1차 산업에 대한 피해만을 걱정하며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제주지역의 청정한 이미지 등을 적극 활용한 수출전략을 세운다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산업구조를 잘 살펴보고, 매년 복잡해지는 원산지관리에 제주수출 기업이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의 [표3-2]은 제주의 산업분류별 업체 및 근로자 현황이다.

[표 3-2] 제주의 산업분류별 업체 및 근로자 현황

구분	산업분류별	2015		비중(%)
		자영업자	상용근로자	
전국	전체	1,184,990	12,151,369	100.0
	A. 농업,임업및어업(01~03)	0	27,129	0.2
	B. 광업(05~08)	249	12,915	0.1
	C. 제조업(10~33)	170,900	3,375,201	27.8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42	62,674	0.5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1,851	71,050	0.6
	F. 건설업(41~42)	34,440	653,501	5.4
	G. 도매및소매업(45~47)	303,847	1,525,378	12.6
	H. 운수업(49~52)	13,913	609,932	5.0
	I. 숙박및음식점업(55~56)	308,141	576,194	4.7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7,010	467,516	3.8
	K. 금융및보험업(64~66)	1,626	444,608	3.7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29,957	340,858	2.8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40,210	871,089	7.2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11,458	848,028	7.0
	P. 교육서비스업(85)	65,246	508,818	4.2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102,754	1,202,690	9.9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30,959	114,662	0.9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62,387	439,126	3.6

32)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jeju/peace/world/present.htm

제주	전체	17,129	119,191	100.0
	A. 농업,임업및어업(01~03)	0	1,436	1.2
	B. 광업(05~08)	1	203	0.2
	C. 제조업(10~33)	723	7,113	6.0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0	858	0.7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21	543	0.5
	F. 건설업(41~42)	578	11,388	9.6
	G. 도매및소매업(45~47)	4,506	16,981	14.2
	H. 운수업(49~52)	144	6,770	5.7
	I. 숙박및음식점업(55~56)	6,858	15,073	12.6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60	3,513	2.9
	K. 금융및보험업(64~66)	13	5,564	4.7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207	3,312	2.8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484	4,233	3.6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171	8,812	7.4
	P. 교육서비스업(85)	888	5,293	4.4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1,168	16,854	14.1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445	5,690	4.8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862	5,555	4.7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2015년기준)

## 2. 제주지역 수출 현황

제주도의 무역 규모는 크지 않다. 우리나라 수출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는 제조업체가 전무하기도 하거니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수출하기 위한 경쟁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렇지만 예전부터 1차 산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수출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지만 그 규모는 대부분 영세하다. 최근에는 타지에서 제주로 주소를 옮긴 IT업체의 실적이 반영되면서 공산품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제주지역은 전통적으로 공산품에 비해 1차 산품의 수출 경쟁력이 뛰어났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공산품의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2013년 이후 1차산품의 수출이 제자리걸음 또는 침체하고 있을 때 공산품은 2016년과 비교해 보았을 경우 50% 이상의 증가율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자직접회로의 수출은 2017년의 경우 68,698천달러로 전년대비 96.2%의 수출성장률을 보였으며, 2013년 이후 제주지역 전체 수출성장률이 50%인데 대부분을 반도체산업에서 주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출성장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농수축산품의 수출의 경우 2000년 3,300만달러에서 2017년 6,100만달러로 두 배의 성장에 그쳤으며 2012년 8,300만달러를 수출한 이후로 매년 감소추세이다.<sup>33)</sup> 2013년에는 농·수·축산업 수출 비중이 78% 정도였으나 2017년에는 그 비중이 40%정도로 줄어들었다. 2017년 대부분의 농수축산품의 품목이 수출 감소로 돌아서면서 일부 품목은 한계에 직면한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FTA체결을 바탕으로 수출의 활로를 찾아야할 때이다.

[표 3-3] 제주지역 연도별 부문별 수출실적 (단위 : 1000\$, %)

구분		합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2013년	금 액	103,285	27,895	50,868	1,587	22,935
	비 중	100.0	27.0	49.2	1.5	22.2
2014년	금 액	106,415	23,905	41,088	1,086	40,336
	비 중	100.0	22.5	38.6	1.0	37.9
2015년	금 액	121,068	21,430	38,974	1,366	59,298
	비 중	100.0	17.7	32.2	1.1	49.0
2016년	금 액	128,994	24,530	41,996	2,159	60,309
	비 중	100.0	19.0	32.6	1.7	46.7
2017년	금 액	155,292	21,441	38,555	1,405	93,891
	비 중	100.0	13.8	24.8	0.9	60.5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www.jeu.go.kr](http://www.jeu.go.kr), 기업통상지원과(2017년 기준)

2017년 제주수출을 이끈 것은 메모리반도체이다. 전년대비 96.2%의 성장률을 보여 6,969만달러를 수출하여 제주전체 수출 비중에서도 60%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제주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이었던 활어는 수출 1위 자리를 내주고 있지만 꾸준히 수출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수출액이 전년대비 9.5%감소하였으며 2,354만 달러를 수출하였다.

주요수출 품목 20개를 살펴보면 메모리반도체와 생수를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이 1차 산업 품목임을 알 수 있다. 생수가 2017년 362만달러를 수출하여 9.7%의 성장을 보였으며 제주의 대표 생산품이지만 수출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다. 화장품 품목 등

33) 무역협회제주지부 [http://jj.kita.net/branch/branch01\\_list.jsp](http://jj.kita.net/branch/branch01_list.jsp)

에서도 54%의 수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제주에서 향장산업이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제주지역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품목 : HSK 4단위, 2017년 12월, 단위 : 천불, %)

순 번	품목명	2016년	2017년	
		수출금액	수출금액	증감률
1	전자집적회로	35,516	69,698	96.2
2	활어	26,011	23,547	-9.5
3	연체동물[껍데기가붙어있는지에상관없으며살아있는것과신선한것·냉장이나냉동한것·건조한것·염장이나염수장한것,훈제한것(껍데기가붙어있는것인지또는훈제전이나훈제과정중에조리한것인지에상관없다),연체동물의고운가루·거친가루와펠릿(pellet)(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을포함한다]	7,384	7,111	-3.7
4	금속주조용주형틀,주형베이스,주형제조용모형,금속[잉곳(ingot)용은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물질·고무·플라스틱성형용주형	5,036	4,103	-18.5
5	절화(切花)와꽃봉오리(신선한것과건조·염색·표백·침투나그밖의가공을한것으로서꽃다발용이나장식용에적합한것으로한정한다)	3,889	4,007	3.0
6	물(천연이나인조광천수와탄산수를포함하며,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또는맛이나향을첨가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과얼음과눈	3,304	3,625	9.7
7	플라스틱으로만든물품운반·포장용기,플라스틱으로만든뚜껑·마개·캡과이와유사한물품	35	3,624	10,332.3
8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이와유사한반도체디바이스,감광성반도체디바이스(광전지는모듈·패널에조립되었는지여부와관계없이포함한다),발광다이오드,장착된압전기결정소자	1,034	2,625	153.8
9	신선하거나냉장한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그밖의어육은제외한다]	2,519	2,429	-3.6
10	그밖의채소(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2,278	2,426	6.5
11	감귤류의과실(신선하거나건조한것으로한정한다)	2,595	2,293	-11.7
12	차류(맛과향을첨가했는지에상관없다)	3,272	2,069	-36.8
13	냉동어류[제0304호의어류의필레(fillet)와기타어육은제외한다]	2,346	2,053	-12.5
14	미용이나메이크업용제품류와기초화장용제품류[의약품은제외하며,선스크린(sunscreen)과선텐(suntan)제품류를포함한다],매니큐어용제품류와페디큐어(pedicure)용제품류	1,304	2,009	54.0
15	로커스트콩(locustbean)·해조류와그밖의조류(藻類)·사탕무와사탕수수(신선한것·냉장이나냉동한것·건조한것으로서잘게부수었는지에상관없다),주로식용에적합한과실의핵(核)과그밖의식물성생산물[볶지않은시코리엄인티부스새티범(Cichoriumintybussativum)변종의치커리(chicory)뿌리를포함한다]으로서따로분류되지않은것	1,857	1,691	-8.9

16	가공한 식물성·광물성의 조각용 재료 및 그 제품, 성형품, 조각품	1,663	1,595	-4.1
17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1,664	1,559	-6.3
18	과실주스(포도즙을포함한다)와채소주스(설탕이나그밖의감미료를첨가했는지에상관없으며발효하지않은것으로주정을함유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2,374	1,549	-34.8
19	그밖의도포하지않은종이와판지[롤모양이나시트(sheet)모양으로한정하며,이류의주제3호의것이상의가공을하지않은것으로한정한다]	381	1,439	277.5
20	당근·순무·셀러드용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그밖에이와유사한식용뿌리(신선한것이나냉장한것으로한정한다)	689	1,438	108.6
합계		128,994	155,362	20.4

자료: 무역협회 제주지부 <http://jj.kita.net/>

제주지역 수출2위 품목인 납치는 2017년 수출액이 2,551만달러로 작년보다 8.1% 감소하였지만, 납치는 제주지역 농수축산물 중 부동의 1위 수출품목이다.

2,000년대 초반 5년간 매년 1,000만달러 이상을 수출했던 소라는 2017년 471만달러로 전년보다 3.2%감소하였다. 감귤수출은 202만달러, 감귤농축액은 154만달러를 2017년도에 수출하였다. 생수는 제주지역 전체5위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7년도에 362만달러를 수출하여 전년보다 10.2%성장하였다. 1차 산업군에서 먹는 물과 전복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다.

[표 3-5] 1차 산업의 주요품목별 수출 증감률 (단위 : \$, %)

주요품목		2016년		2017년	
		금액	금액	증감	증감률
농산물	먹는물	3,289	3,626	337	10.2
	백합	3,122	3,181	59	1.9
	녹차	2,633	1,958	-675	-25.6
	감귤	2,495	2,002	-493	-19.8
	감귤농축액	2,347	1,547	-800	-34.1
	키위	1,356	946	-410	-30.2
	양배추	1,255	270	-985	-78.5
수산물	활납치	25,748	23,455	-2,293	-8.9
	소라	4,865	4,710	-155	-3.2
	냉장납치	2,015	2,061	46	2.3

	전북	1,626	2,180	554	34.1
	전통	1,483	1,046	-437	-29.5
축산물	소고기	664	133	-531	-80.0
	돼지간	185	260	75	40.5
	생유	214	45	-169	-79.0

자료 : 제주도청홈페이지 [www.jeju.go.kr](http://www.jeju.go.kr), 기업통상지원과(2017년 기준)

다음으로 국가별 수출을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제주지역 수출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에도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고 수출국가도 다변화되면서 홍콩과 대만,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홍콩으로 수출이 많은 것은 중국으로 우회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이 된다. 전통적으로 넉치들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FTA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수출하고 있고 2017년에는 제주지역 수출2위 국가였다.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는 눈여겨볼만하다. 2017년에 전년대비 126% 수출 성장을 했다는 것은 2015년 한-베트남 FTA를 체결한 이후 중국시장을 대체할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겠다.

[표 3-6] 제주지역 주요국 수출입 현황 (단위:천\$, %)

순번	국가명	2016년		2017년			
		수출금액	수입금액	수출금액	수출증감율	수입금액	수입증감율
1	홍콩	23,359	2,296	51,706	121.4	1,918	-16.5
2	일본	42,761	26,698	36,954	-13.6	36,455	36.5
3	중국	16,651	49,480	17,308	3.9	62,675	26.7
4	미국	16,743	98,530	16,009	-4.4	79,250	-19.6
5	대만	3,752	8,289	9,673	157.8	14,396	73.7
6	베트남	2,290	2,816	5,174	126.0	5,539	96.7
7	독일	5,291	5,365	4,284	-19.0	18,029	236.0
8	태국	2,907	7,508	2,138	-26.4	6,782	-9.7
9	인도(인디아)	2,216	2,616	1,694	-23.6	947	-63.8
10	싱가포르	2,355	1,795	1,579	-32.9	2,880	60.5
11	인도네시아	1,004	1,013	1,518	51.2	1,099	8.5
12	호주	1,230	2,823	1,175	-4.5	4,436	57.1
13	캐나다	1,397	9,351	752	-46.2	13,362	42.9
14	러시아	452	1,600	574	27.0	1,197	-25.2
15	네덜란드	495	4,385	551	11.5	8,245	88.0
16	필리핀	417	981	530	27.1	1,115	13.7

17	말레이시아	613	2,091	510	-16.8	1,099	-47.4
18	괌	543	5	490	-9.7	6	20.7
19	프랑스	936	47,872	365	-61.0	53,006	10.7
20	영국	1,026	20,745	357	-65.2	24,833	19.7
합계		128,994	368,823	155,362	20.4	410,901	11.4

자료 : 무역협회제주지부 <http://jj.kita.net/>

경제권역별로 제주지역 수출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역에 83%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북미지역에 11%, 유럽에 4%정도를 수출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제주지역이 농수축산물의 1차 산업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는 환경에서 이동거리가 먼 지역으로의 수출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 들어 반도체와 미용 산업에서의 수출이 활기를 보이면서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도 수출의 영역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표 3-7] 제주지역 대륙별 수출현황

(2017년 12월 , 단위 : 천불, % )

순번	대륙권명	2016년	2017년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1	아시아	98,896	129,437	30.9
2	북미	18,140	16,761	-7.6
3	유럽	8,804	6,667	-24.3
4	대양주	1,883	1,760	-6.5
5	중동	1,112	610	-45.1
6	중남미	113	110	-3.3
7	아프리카	46	16	-65.0
8	기타지역	0	0	0.0
합계		128,994	155,362	20.4

자료 : 무역협회제주지부 <http://jj.kita.net/>

## 제2절 설문항목 구성 및 설문방법

### 1. 설문항목 구성요소 및 배경

#### 1). 항목구성 근거

우리나라는 FTA체결을 통해 안정적 시장경제 영토를 계속적으로 확장하고자 하였고 2018년 현재 미국, EU 중국 52개 국가와 FTA를 성사시켰다. 일본을 제외하면 전

세계 주요국과의 FTA협상을 마무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지역 수출업체, 특히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영세수출기업들이 FTA의 관세특혜를 활용한 수출확대에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큰 변화가 없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주기업들이 원산지제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를 위해 어떤 개선방안점이 있는지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원산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표와 같은 요인을 근거로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3-8]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요인을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의해 추출되었다

[표 3-8] 설문항목 구성을 위한 근거

요인		연구자	주1	주2	주3	주4	주5
기본 현황	기업의 업종 및 종업원 수		○	○	○		
	매출 규모 및 수출비중		○	○	○		
FTA활용정도	FTA 활용 수출비중			○	○		
	인증수출자제도			○	○	○	
	전문인력배치			○	○	○	○
FTA교육 개선방안	FTA 교육 참여 정도		○	○	○		
	FTA 교육 개선		○	○			
원산지제도 관리개선방안	애로사항		○		○	○	○
	개선사항		○			○	○

주1.허찬국(2015), 주2. 최준(2016) ,주3.강유정(2017), 주4. 박홍규(2015),주5. 박철구,최장우(2013)

## 2). 설문 항목 구성

설문조사 항목은 회수율을 고려하여 20문항 정도로 구성하였으며 업체의 기본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 4개, FTA 활용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 6개, FTA 교육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한 문항 4개, FTA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의 문항 6개로 이루어졌다.

기본현황을 묻는 질문을 통해 업체의 업종과 종사원수, 매출규와 수출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업체의 규모가 FTA에 대응력에 상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FTA활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수출 중에서 FTA를 활용한 수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FTA체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수출이 증가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원산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지를 묻고자 한다. 그리고 외부에서 원산지 관련 업무에 관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어디를 통해 받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FTA교육 현황과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서는 각 기관에서 실시하는 FTA교육에 참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수출실적과 교육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업체에서 FTA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것이 업체 규모에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업체의 현장에 필요한 교육의 요구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FTA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에서는 향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로 수출을 준비중인지 알아보고 FTA활용에 느끼는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수출활성화를 위해 원산지관리제도의 운영상 개선점을 찾아보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설문조사방법

### 1). e메일 설문조사

제주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기업 중에 수출하고 있는 업체를 현황을 조사하였다. 제주지역에서 100만달러 이상 수출품목은 2000년 10개에서 2013년 22개로 증가한 이후 최근 20개 품목정도이다. 2017년 현재 제주지역에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총 87개이다. 1000만달러 이상이 2개사, 500만달러 이상 1개사, 300만~100만달러 이상 16개사, 나머지 68개사는 100만달러 미만이다.<sup>34)</sup> 이 업체들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실적이 있는 총 62개의 업체에 대해 설문조사에 협조요청 메일을 발송하였다. 메일을 발송한 업체 중에서 12개의 업체에서 회신을 하여왔다. 표본수가 적어서 분석의 한계가 있지만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원산지관리의 개선점을 찾고자하였다.

34) 무역협회제주지부 <http://jj.kita.net/>

## 2). 전화 인터뷰 및 방문조사

e메일 회신한 업체가 적어서 별도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여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 업체 중 업종별로 상이한 3개의 업체를 선정하였다. H주식회사는 식음료 가공업체로 현재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매출이 500억 이상이지만 수출보다는 내수를 위주로 하고 있다. U법인은 1차산업을 위주로 한 업체이며 년 매출의 상당부분을 수출하고 있다. M주식회사 화장품제조업체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이며 수출의 실적을 별로 없지만 수출을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업체이다. H주식회사와 M주식회사 2개의 업체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U법인은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메일로 설문조사한 내용과 동일하지만 좀 심도 있게 질문을 진행 하였다. 직접면담조사를 통해 e메일 회신의 표본수가 적은 것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 제3절 설문조사 실태분석 및 인터뷰 분석

제주수출기업들이 FTA 체결된 국가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원산지제도를 제주수출기업들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e메일 발송 및 전화 인터뷰 그리고 방문면담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은 e메일로 회신한 12개의 업체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인터뷰 분석이다.

### 1. 설문조사 실태분석

#### 1) 일반적 현황 분석

설문에 응한 12개의 기업 중에서 농·수·축산업이 6개 업체로 50%를 차지했고, 식음료 가공이 4개 업체, 화장품·미용업체가 2개 업체였다. 매출규모는 크지 않지만 제주수출의 주도업체는 1차 산업인데 설문응답 업체 또한 대다수가 농수축산업이었다. 또한 제주의 생수업체와 주류업체가 설문에 응하여 주었으며, 화장품 제조업체에서도 설문에 응하여 주었다.

종사자 수는 10명-30명 미만이 6개 업체였으며, 10명 미만이 3개 업체, 30명-100명 미만이 2개 업체, 500명이상이 1개 업체였다.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는 1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종사자가 많지 않은 영세업체임을 알 수 있다. 제주지역 수출업체가 전체적으로 영세한 규모임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연매출 규모는 3억 미만이 1개 업체, 3억-5억 미만이 3개 업체, 5억-10억 미만이 2개 업체, 10억-100억 미만이 4개 업체, 100억 이상이 2개 업체였다. 매출액 또한 타지역과 비교해서 많이 떨어진다. 주류업체와 공공기관인 업체를 제외하면 전부 연매출 100억 미만의 업체임을 알 수 있다.

매출에 대하여 수출규모는 3%이하가 5개 업체, 3%-10%이하가 2개 업체, 10%-30%이하 1개 업체, 30%-50%이하 1개 업체, 50%이상이 3개 업체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규모의 비중은 매출규모와 비례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출이 큰 2개의 업체는 수출비중이 적었으며 내수를 위주로 하고 있었고 1차 산업 업체에서 수출을 위주로 하고 있었다.

[표 3-9] 응답업체 일반현황

업종별 분류					
구 분	①전자,기계	②농,수,축산물	③식음료가공	④화장품,미용	⑤기타
업체수	0	6	4	2	0
비 율	0	50%	33%	17%	0%
직원 규모별 분류					
구 분	①10명미만	②10-30명미만	③30-100명미만	④100명이상	⑤500명이상
업체수	6	3	2	0	1
비 율	50%	25%	17%	0%	8%
매출별 분류					
구 분	①3억미만	②3억-5억미만	③5억-10억미만	④10억-100억미만	⑤100억이상
업체수	1	3	2	4	2
비 율	8%	25%	17%	33%	17%
매출대비 수출비중					
구 분	①3%이하	②3%-10%이하	③10%-30%이하	④30%-50%이하	⑤50%이상
업체수	5	2	1	1	3
비 율	40%	17%	8%	8%	25%

## 2) FTA 활용 정도에 관한 분석

회사의 수출액 중에서 FTA특혜관세를 받고 있는 비율에 대한 질문에는 “10%이하”가 8개 업체로 가장 높게 응답을 하였고 “30%이하”가 1개 업체, “70%이상”이 3개 업체였다. 수출은 하면서도 FTA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아직 FTA체결은 하지 않은 일본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가 있으며 주류업체와 공공기관의 생수업체는 FTA관세특혜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었다. 앞의 매출 대비 수출비중의 문항과 비교해서 봤을 때 전체매출에서 수출의 비중이 높은 업체에서는 FTA특혜관세를 받아서 수출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가 9개 업체였고, “아니다”가 3개 업체였다. 대다수 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알고 있으며 인증 받았다고 답하였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취득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절차를 몰라서”에 1개 업체, “별 이득이 없어서”에 2개 업체가 응답을 하였다. 수출자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업체도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업체는 1개였으며 절차를 모르거나 수출자인증제도를 몰라서 취득 안하기보다 별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취득하지 않는 업체가 2개 업체였다.

FTA체결 이후에 수출이 늘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변동이 없거나 아니더라고 응답한 업체가 10개 업체로 대부분이었다. FTA체결로 수출이 증가하였다는 업체는 2개 업체이고 나머지는 FTA체결에 따른 수출증가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른 문항과의 연계해서 분석하였더니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가 FTA 관세혜택을 받고 수출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이들 업체들이 FTA체결 이후 수출이 증가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원산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예, 아니오가 각각 6개 업체였다. 원산지전담 직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적을 원산지 업무만 하는 의미는 아니며 다른 업무와 병행하면서 원산지업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원산지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는 환경의 기업의 경우도 각 FTA별로 원산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

원산지업무를 도움 받고 있는 기관에 대한 질문에는 상공회의소가 9개 업체였으며, 관세사와 무역협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 하였다. 원산지 관련업무를 협조는 대부분 지역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무역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할 필요가 있다.

[표 3-10] FTA 활용 정도에 대한 응답 분석표

수출대비 FTA특혜관세적용 수출 비율					
구 분	①10%이하	②10%-30%이하	③30%-50%이하	④50%-70%이하	⑤70%이상
업체수	8	1	0	0	3
비율	67%	8%	0%	0%	25%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구 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받음			받지 않음	
업체수	9			3	
비율	75%			25%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하지 않은 이유					
구 분	①절차를 몰라서	②실익이 없어서	③정보유출우려	④귀찮아서	⑤기타
업체수	1	2	0	0	0
비율	33%	67%	0%	0%	0%
FTA체결로 수출의 변화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업체수	1	1	7	2	1
비율	8%	8%	59%	17%	8%
원산지 전담업무 직원 유무					
구 분	원산지업무 전담직원 있음			없음	
업체수	6			6	
비율	50%			50%	
원산지 관련 협조기관					
구 분	①관세사	②상공회의소	③중소기업지원센터	④무역협회	⑤기타
업체수	2	9	0	1	0
비율	17%	75%	0%	8%	0%

### 3) FTA 교육에 관한 분석

지난 3년간 FTA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3회에서 5회가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FTA 교육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고 1회성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FTA교육의 개선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이론교육보다 현장에서 실무교육(4개업체)

과 사례분석 교육(6개업체)을 주로 요구하였다. 전달식 강의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피로감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며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무교육을 위주로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향후 FTA교육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6개 업체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하였다. FTA의 교육의 필요성은 1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전부 공감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강의식 전달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진행한다면 교육에 참여하고자 의사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표 3-11] FTA교육에 대한 응답분석표

지난 3년간 FTA 교육 수료 횟수					
구 분	①없음	②3회미만	③3회-5회미만	④5회-10회미만	⑤10회이상
업체수	3	5	4	0	0
비 율	25%	42%	33%	0%	0%
FTA교육의 개선사항					
구 분	①초,중,고급 체계적 교육	②이론보다 실무교육필요	③전문가 양성교육	④현장감있는 교육(사례분석)	⑤기타 ( )
업체수	0	4	1	6	1
비 율	0%	34%	8%	50%	8%
FTA교육 참여 의사					
구 분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업체수	2	4	5	0	1
비 율	17%	43%	42%	0%	8%

제주지역 수출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묻는 단답형 질문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현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요구하는 부류와 심화과정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FTA활용을 잘 하는 수출기업에서는 전문가 양성교육과 각 국가별 FTA체결 내용에 대한 심화 교육 등을 원하였고 FTA활용이 아직 미진한 업체에서는 서류작성 등 기초적인 교육을 요구하였다.

[표 3-12] 수출업무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답변 사례

연번	수출업무에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에 대한 답변 사례
1	무역실무 - 심화과정 교육
2	실무교육 - 서류작성
3	국가별 인증절차 교육
4	비전문 인력으로도 무역을 진행 할 수 있는 초보자용 실무 교육
5	국가별 실무처리 방법
6	현지유통에 대한 정보
7	실무관련자나 수출전담담당자의 실질적인 실무위주(원산지증명서 직접 작성 등) 교육 필요
8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 4) FTA 활용 방안에 대한 분석

수출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모든 기업체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아직까지 수출실적이 많지 않음에도 수출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느 나라인지 묻는 응답(복수응답)에는 베트남이 6개 업체가 미국에 5개 업체, 일본과 중국이 각각 2개 업체가 응답을 하였고 동남아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1개 업체가 응답하였다. 사드문제로 무역에서 애로사항을 느낀 기업들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본을 제외하고 FTA체결을 하고 있어 특혜관세를 잘 활용하면 수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 업체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도 5개 업체가 있어서 동남아시아를 넘어 미대륙으로 제주 기업들이 관심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 할 것이다.

FTA를 이용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보부족(4개 업체), 인력부족(4개 업체)에 응답을 많이 하였다.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2개 업체가 있어서 스스로 원산지제도를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번거로워서 원산지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1개 업체도 있었다. 정보부족이라고 응답한 경우의 업체는 지속적인 실무교육과 FTA홍보를 통해 개선할 여지가 있지만 인력부족을 어려움으로 겪는 업체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FTA를 활용한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도움을 어떤 것인지 묻는 질문에 전문 인력 제공, 자금지원, 정보제공, 실무교육이 골고루 응답하였다.

[표 3-13] FTA 활용에 대한 응답 분석표

수출 계획 여부					
구분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계획 없다	
업체수	12			0	
비율	100%			0%	
향후 수출 계획 국가					
구분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기타
업체수	2	2	5	6	1
비율	12%	12%	32%	38%	6%
FTA 이용에 애로사항					
구분	①정보부족	②인력부족	③제품인증 어려움	④번거로움	⑤없음
업체수	4	4	1	1	2
비율	34%	34%	8%	8%	16%
FTA활용을 위한 지원요구사항					
구분	①전문인력	②실무교육	③자금지원	④정보제공	⑤기타 ( )
업체수	3	3	3	3	0
비율	25%	25%	25%	25%	0%

제주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단답형 질문에는 대다수 업체가 물류지원 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특히 수출을 위해 국내 운송비가 국외 운송비 보다 더 비싸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도 있었다. 또한 지방출자기관을 설립을 통해 수출을 대행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고 진성 바이얼 발굴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었다. 제주지역이 섬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수출을 위해서는 부산항 등을 경유해야 할 경우 물류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겠다.

[표 3-14] 제주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연번	제주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요구사항
1	지방출자기관 설립으로 수출대행
2	물류비지원. 국내(제주-부산)운임이 국외보다 더 비쌈
3	진성 바이어 발굴, 인증비 지원, 물류비 지원
4	수출의 실질적인 지원(바이어 발굴, 물류비지원)
5	물류비 지원정책 유지
6	물류시스템 개선, 제주CY설치

7	제주지역의 섬이라는 특성 상 수출을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가 운영하는 (가칭)물류센터가 존재함으로써 기업들에게 유통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8	물류비 지원, 바이어 발굴 지원

원산지제도 이용에 대한 개선이나 요구사항을 묻는 단답형 질문에는 많은 요구사항을 응답하였다.

그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TA체결국에 따라 국가기준이 상이해서 국가기준 통일을 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일 기준 3일 후 수입신고를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선적인 기준 3일 영업일 후 신고를 하는 체계여서 다른 적용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같은 국가에 대해서 같은 원칙을 우리나라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로 비용 및 이용절차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주지역 수출업체는 영세해서 원산지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용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서류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원산지 전담 지원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구이다. 행정기관에서 수출입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항상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원하고 있다. 현재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관련업무를 협조 받고 있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표 3-15] 원산지관리제도 개선 및 요구사항

연번	원산지관리제도에 관한 개선 및 요구사항
1	국가기준이 상이함. 국가기준 통일, 일원화 필요 -인도네시아 선적일 기준 3일후 수입신고, 대한민국 선적인 기준 3일영업일후 신고... 기준차이 존재
2	제출 서류 간소화
3	비용 및 이용절차 간소화
4	국가, 품목별 즉시 FTA협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조회하고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문 무역업을 하는 업체가 아닌 경우 거의 대부분이 수출에 대한 비중이 낮기 때문에 무역, FTA등 전담인력을 두는 것에 대한 부담과 교육 및 인력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역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 활용 매뉴얼 같은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공공기관의 교육 및 협조체계가 매우 잘 되어 있어 큰 문제없이 처리가능함. 별 의견 없음.
6	원산지인증시스템 교육 필요.

7	원산지증명에 대한 서류. 즉 기업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은데 이를 보완하거나, 시스템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기업지원이 필요하다
8	행정기관에서 수출입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 력을 배치해서 기업체가 요구할 때 출장상담 또는 전화 응대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9	원산지증명 관련 전문 인력 지원

## 2. 인터뷰 분석

면담 인터뷰를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으며 농수축산업종, 식음료가공업체, 화장품 제조업체 각 1개 업체를 선정하여 면담 설문조사 하였다. 면담 설문조사 내용은 위 이메일 접수와 동일하며 좀 더 세밀하게 면담조사 하였다.

### 1) H주식회사

이 회사의 경우 종업원 수는 100명이하이며 년 5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중견업체이고 수출의 비중은 전체 매출의 3% 미만으로 내수 위주의 업체이다. 원산지관리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FTA특혜관세를 100%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에 대해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FTA체결로 인한 수출증가 혜택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수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하기 보다 현실 여건이 수출을 크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생산규모에서는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향후 생산라인 확대가 이루어지면 수출에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다. 제주에서 상품을 제조해서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물류비이다. 수출 지원을 위해 물류비 지원 또는 물류체계 개선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제주CY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수출을 전담하는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팀에서 수출관련 상담과 원산지관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원산지제도 이용에 큰 애로사항은 없으며 FTA활용을 위해 원산지인증시스템교육과 전문가 과정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H주식회사는 수출의 비중이 많지 않지만 수출하는 건에 대해서 FTA 관세혜택을 잘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수출을 준비 중인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FTA관세혜택 적용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 이 업체의 경우 FTA 전문가 과정 교육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면 원산지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수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의 생산규모 확장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업체에 대한 물류비지

원 또는 물류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표 3-16] H주식회사 면담조사 내용 정리표

구 분		응 답 내 용	구 분		응 답 내 용
기본 현황	업종	식음료가공	FTA 교육	FTA교육	3년 동안 2회
	종업원 수	30명-100명		FTA희망교육	현장감있는교육(사례 분석)
	년매출규모	500억이상		교육참가의사	높음
	매출대비 수출비중	3%이하		수출업무에 필요한 교육	수출국 현지 유통에 대한 정보
FTA 활용 정도	FTA활용	70%이상	FTA 활용	수출계획	있음
	인증수출자	인증		수출대상국	베트남
	FTA체결후 수출	변화없음		FTA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인력부족
	원산지 전담직원	없음		FTA활용 요구사항	실무교육
	원산지업무 협조기관	관세사,상공회의소		수출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제주 물류 시스템 개선, 물류비용 절감 방안 마련(제주cy설치)
			원산지제도 개선 및 요구사항	원산지인증시스템 교 육,전문가양성교육	

## 2) U법인

이 업체의 경우 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로 직원은 30명이하이며, 년 매출은 70억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을 FTA관세혜택을 받아서 수출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업체의 대표는 FTA체결에 따른 수출증가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으며 전 직원이 원산지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원산지증명은 외국 바이어들이 필수로 요구하는 사항이며 이를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업체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인증자 인증을 받고 원산지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관에서 원산지관련 업무지원을 잘 해주고 있어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많은 FTA체결로 인해 국가 간 상이한 내용에 대해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향후 동남아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업체 또한 수출활성화를 위해 제주지역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출 지원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관련기관에 배치하여 현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FTA체결국 가 별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현장 지원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 업체는 FTA체결에 따른 수출증가의 효과를 보고 있는데 회사 대표가 FTA 환경에 앞서서 대응하고 원산지증명 업무가 또 다른 무역장벽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당연히 필요한 업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런 마 인드가 FTA체결로 인해 넓어진 경제영토를 잘 이용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기 업의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경영자의 마인드에 좌우한다는 것을 이 업체 대표는 말하고 있다.

[표 3-17] U법인 면담조사 내용 정리표

구 분		응 답 내 용	구 분		응 답 내 용
기본 현황	업종	농수축산물	FTA 교육	FTA교육	매년 1회 이상
	종업원 수	10명-30명		FTA희망교육	전문가 양성교육
	년매출규모	10억-100억미만 (70억정도)		교육참가의사	매우 높음
	매출대비 수출비중	50%이상		수출업무에 필요한 교육	무역협회에서 교육을 잘 해주고 있다
FTA 활용 정도	FTA활용	70%이상	FTA 활용	수출계획	있음
	인증수출자	인증		수출대상국	동남아
	FTA체결후 수출	매우 증가		FTA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체결국마다 각기 달 라 내용 숙지 어려움
	원산지 전담직원	없음(전직원 교육,가 능)		FTA활용 요구사항	전문인력
	원산지업무 협조기관	상공회의소		수출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물류비용 절감 대책 마련
			원산지제도 개선 및 요구사항	공공기관에서 전담인 력을 배치하고 출장 상담 및 전화응대를 바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요구. 많은 FTA체결로 전문상담 을 해줄 인력이 많이 모자라다고 함.	

### 3)M주식회사

M주식회사는 화장품제조업체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 수출을 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출범한 업체이다. 직원 10명 정도이며 년 매출은 3억원 이하이다. 아직 홍보를 위한 수출 이외에는 별다른 수출 실적은 없지만 향후 미국 등으로 수출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FTA를 적극 활용해서 수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 등의 원산지 실무교육을 원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업체이다 보니 제품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FTA교육은 빠짐없이 참가할 계획이고 수출을 위해 수출인증을 받았다.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물류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출이후의 사후 검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원산지업무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원산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류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된 양식이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M주식회사는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으로 실무자가 기본적인 서류작성도 쉽지 않아 업무지원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기관에서의 현장 대응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에 FTA 실무에 관한 업무가 늘어나면서 담당자들이 즉각적인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8] M주식회사 면담 조사내용 정리표

구 분		응 답 내 용	구 분		응 답 내 용
기본 현황	업종	화장품제조	FTA 교육	FTA교육	매년 1회 이상
	종업원 수	10여명		FTA희망교육	사례분석 교육
	년매출규모	3억미만		교육참가의사	매우 높음
	매출대비 수출비중	매출대비 3%이하		수출업무에 필요한 교육	수출전담자의 실무위 주교육
FTA 활용 정도	FTA활용 인증수출자	수출대비 10%이하 인증	FTA 활용	수출계획	있음
	FTA체결후 수출	해당없음		수출대상국	미국
	원산지 전담직원	있음		FTA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제품인증 어려움
	원산지업무 협조기관	관세사,무역협회		FTA활용 요구사항	자금지원
				수출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물류센터 설치로 제 주기업의 유통부담감 덜어주기 바람.
		원산지제도 개선 및 요구사항	원산지업무 지원을 시스템적으로 해주기 바람.		

## 제 4 장 실태 및 인터뷰 분석의 종합적 결론과 방안

### 제1절 실태분석의 종합적 결론

#### 1. 설문지 조사의 종합적 결론

설문에 응한 업체는 제주기업 중에서 농수축산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식음료 가공산업이 대부분이었고 사업체 종사자가 100명이하의 중소기업이었다. 매출의 비중이 수출을 위주가 아닌 내수 위주인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다. 표본수가 작아 이것이 전체 제주기업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선행 연구된 제주기업의 분류에서도 농수축산물 및 음료식품 가공업체가 67%가 넘었던 것과 매출규모 또한 5억원 이하가 65%인 것을 보면<sup>35)</sup> 본 연구의 설문 응답업체가 표본과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없다. 제주지역에 특별한 제조업이 없는 현실에서 아직까지는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의 수출의 역량이 제주수출의 토대라 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 3개 업체를 제외한 9개 업체였다. 2010년 이후 실시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현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그 필요성이나 절차를 모르겠다는 업체도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수출에서 FTA를 이용한 비율이 높은 업체에서 FTA체결 이후에 매출이 증가하였다는 답변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응답한 대다수 기업이 FTA 체결에 따른 수출증가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적은 기업이며 수출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영세한 업체 여건으로 수출을 위한 원산지업무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세 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련 실무에서 어려움을 느끼다 보니 수출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FTA교육은 대부분 년 1~2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향후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지만 이론 교육보다 현장에서 서류 작성하는 실무교육 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5) 최준, 2015년, 제주지역 원산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p26, p28.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우는 관련기관에서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 문제없이 원산지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원산지 관련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 업체보다는 영세한 업체를 위주로 FTA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응답한 모든 업체가 수출을 계획 중이라고 답하였으며 베트남, 미국, 중국 등 FTA가 체결된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FTA를 활용한 수출을 하고자 하지만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전문 인력이 없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가 FTA체결 국가 및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세수출 업체에게는 수출을 증진하기 위한 혜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담직원이 없는 현실에서 각국의 FTA체결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업체들이 FTA체결에 따른 수출증가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FTA체결로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수출상품의 원가를 낮추게 됨에 따라 수출이 증가해야 함에도 제주업체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 경쟁력이 제조업에 있어서 1차 산업 중심의 제주업체에는 FTA체결을 한다고 해도 수출 경쟁력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둘째, 영세업체의 경우 원산지관련 전담 업무 직원을 별도로 두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전문 인력을 늘려 배치하고 현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공회의소에 수출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이론 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는 전문가 과정의 교육과 각 FTA별 특화된 인력을 확충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인증과 사후검증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 인력을 보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가 협회 등과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제주지역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류비 지원과 고비용의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의 모든 업체가 수출을 위한 개선사항에 물류비 지원 또는 물류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업체들이 FTA특혜를 받

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보다 물류비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인터뷰 조사의 종합적 결론

인터뷰한 3개의 업체의 결과도 메일접수 한 결과에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수출에 관심이 있고 FTA관세특혜를 받고자 한다. 실제로 U업체의 대표는 수출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인터뷰 결과가 나왔다.

H주식회사의 경우 매출이 500억이 넘는 회사로 식음료제조업체이지만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현재 수출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출을 위한 전담인력을 구성하거나 전략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수출을 하는 국가가 FTA를 체결한 국가인 경우 관세특혜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수출을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으며 향후 베트남으로 수출하기 위해 계획 중이다. 대량의 완제품을 운송하다 보니 물류비가 절감 노력에 관심이 많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받고 있으며 관련기관에서 교육 등으로 FTA 교육 및 홍보 등으로 협조하면 충분히 대응 능력이 있는 업체이다.

U업체의 경우 연매출이 60억정도이고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업체이다. FTA체결을 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반드시 관세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원산지증명 업무를 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어가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수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업무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공회의소와 무역협회에서 실시하는 FTA교육을 잘 이수하고 있다고 하며 교육이 잘 되고 있어서 원산지 관리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한다.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으며 나라마다 각기 다른 원산지규정 때문에 숙지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인데 도청에서 전담반을 설치해서 현장대응을 즉각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 FTA 업무가 많아지다 보니 소수의 전문인력이 제때에 상담을 해주지 못해서 아쉬울 때가 있다. 공공기관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업체에서 상담이 오면 즉각 출장 또는 전화 응대를 요구하고 있다.

M주식회사의 경우는 화장품제조업체로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이다. 종업원이 10여명이 있고 현재 매출은 3억 이하이며 수출의 비중은 높지 않지만 수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미국으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다. 아직은 단발성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인증하였고 FTA 교육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감 있는 사례분석 교육과 실질적으로 서류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 원산지증명을 하는데 있어 제품인증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출지원을 위해 제주도가 섬의 위치에 있어 물류비 부담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산지증명 서류의 간소화와 시스템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 제2절 수출활성화를 위한 원산지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위에서 e메일 접수 및 인터뷰 한 설문조사 업체수가 적어서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유형별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주목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현화정(2016) “원산지관리 역량 및 이미지가 기업의 원산지제도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을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원산지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원산지관리 교육이 필요하며 회계사, 관세사 등의 원산지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 내에서의 ERP운용을 통하여 원산지관리시스템의 연계로 글로벌한 경영 환경에 적절한 사업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원산지제도 활용성과와 정보관리 시스템의 성과를 높여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주지역처럼 매출이 작고 규모가 영세한 업체 대다수는 원산지업무에 대한 전담인력을 두고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바이어가 제품을 원할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영세업체들의 경우 서류발급을 위한 서류작성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수출을 장려하는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FTA원산지관련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항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업체의 능력을 향상 시켜주기 위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종사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업체에서 소수 인원이 모든 업무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영세한 업체에는 실무적인 서류발급을 위해 도움이 필요함으로 기초적인 교육과 현장지원업무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수출이 활성화 되고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는 전문화된 FTA교육이 필

요하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에 늦게 뛰어들었지만 체결의 속도와 범위는 매우 빠르고 넓어서 체결된 모든 FTA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FTA를 잘 활용하고 있는 업체도 늘어난 각종 FTA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기업체에서는 원산지전담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FTA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공공기관에서 전담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고 이를 통해 기업체와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제주지역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체계 및 물류비 지원이 필요하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모든 업체들이 제주지역 수출을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체계 개선, CY설치 또는 물류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국내유통에서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농수산물 조수입(화훼제외)이 1조4,080억이며 이중 물류비는 15.7%를 차지하지만 화훼와 축산물을 포함한 도외반출 총 물류비 비중이 26.25%에 이른다.<sup>36)</sup> 서현진, 이상봉은 “제주지역 기업의 효율적 절감 방안에 관한연구”를 통해 물류관련 자동화·기계화시설의 도입을 통한 물류합리화투자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물류공동화나 물류협업화 등의 추진과 함께 물류전문인력의 보강과 물류조직의 정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주수출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의 지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해운공사 등 공적기관 설립을 통해 제주수출과 지역경제의 최대 고민인 물류비 문제를 해결해서 제주에서 직접 해외수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

36) 제주일보 2017. 9. 26, 6면

## 제 5 장 결 론

###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주는 우리나라의 1%의 인구나 경제력을 가졌으며 본토와 떨어진 섬이라는 환경속에서 주로 1차 산업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식음료가공산업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최근에 반도체 수출이 제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는 외지에서 제주로 이전해온 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2017년 단일품목으로 연 수출액이 5,000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모노리직접회로가 처음인데, 반도체 제조방식 특성상 도외 생산으로 도내 낙수효과와 고용 유발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sup>37)</sup> 제주의 수출이 2017년 전년대비 20.4% 성장을 하였다고 하지만 메모리반도체인 한 개의 업체가 주도한 것이며 그 동안 수출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1차 산업 관련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정부가 많은 FTA를 체결하면서 넓어진 경제영토에서 FTA 특혜관세를 받아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제주지역에서는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수출이 확대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체결된 많은 FTA체결로 인해 수출로 인한 경제적 이득보다 수입으로 인한 1차산업 위주의 제주지역에는 피해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정책에 의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FTA체결이 제주지역만 피해 갈 수도 없다. 따라서 제주수출기업이 FTA환경에 선진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만 한다. FTA체결을 했다고 해서 모든 수출품이 관세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을 계획하는 기업은 수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에서 원하는 원산지증명을 준비하고 사후검증 또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FTA 협약 내용에 따른 원산지제도의 이해와 관리는 이제 수출의 기본 전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수출기업들이 어떻게 원산지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설문과 면담조사를 통해 살펴본 제주수출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기업으로 원산지전담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두고 있지 않다. FTA관세혜택을 받아 수출원가를 낮추고 수출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오히려 FTA전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야 하는 비용발생 요인이 생긴 것이다. 이에 대해 많은 수출관련부서에서 각종

37) 한라일보, 2018. 1. 24. 6면

FTA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현장에 파견해서 제품인증과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산되어 있는 FTA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현장과 1:1 대응할 수 있는 수출담당 부서를 확충하거나 상공회의소의 인력을 보강하여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면담조사를 했던 U법인처럼 FTA 대응력을 갖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문가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초 수출업체에 1:1 사례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U법인 대표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회사의 수출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제주수출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원산지관리제도의 운영상의 어려움보다 수출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류비지원 또는 물류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수출국으로의 운송비 보다 제주에서 부산까지의 운송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업체의 고민은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물류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공동물류센터 또는 CY설치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해상운송을 전담할 제주해운공사 등 공적기관 설립을 통해 제주수출과 지역경제의 최대 고민인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에서 직접 해외수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물류비에 대한 고민 해결은 모든 수출전략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기본과제가 되고 있다.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 원산지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수출기업에 대해 FTA 환경에서 수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수출을 하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수출활성화를 위해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조사 및 전화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이 있는 62개의 업체 중에서 12개의 업체만 설문에 응답하여 설문의 표본수가 많지 않음을 매우 아쉬움으로 남는다. 다만 3개의 업체에 대해서는 면담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했지만 여전히 표본의 수가 적은 것에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후 연구를 통해 모든 수출업체를

전수 조사하고 제주지역 업체들이 수출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명신, “한국 FTA 지원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2015.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강유정, “한국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2017,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FTA)의 조문별 유형 분석: 한국의 FTA 상품무역규정협상 가이드라인의 모색」, 산업연구원, 2003
- 경환,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한·중 수출 물동량의 비교 분석 연구”, 2017, 한서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무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김석규, “우리나라 FTA 원산지증명제도에 관한 연구”, 2016, 충남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시라의1명, “우리나라 FTA 정책활용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7, 관세학회지 제18권, p119-p140
- 김정환, “물품무역을 중심으로 본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에 관한 연구”, 2011,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거래법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지희,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한 연구”, 2017,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학위논문
- 김창봉외1인, “원산지제도의 복잡성, 관리수준, 대응전략과 원산지제도 활용성파의 관계연구”, 2011, 관세학회지 제12권 제2호 p89-p109
- 김창봉외 3인, “기업규모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산지제도 관리역량이 원산지 운용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8, 관세학회지 제19권 제1호 p67-p86
- 김학민, “FTA시대의 선도형 무역인력 양성”, 한국무역학회 세미나 및 토론회, pp.28-37, 2015.
- 김학민 외 3명 “대학 FTA 강좌 참고교재”, KOTRA, 2016
- 김한성·조미진·정재완·김민성, 「한국FTA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2008,
- 문병기의 5인, 2016년 수출입평가 및 2017년 전망, 2016,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박준현, “FTA 체제하에서 수출 기업의 원산지결정기준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2014, 한국의외어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철구의1명, “원산지관리역량 및 FTA 활용 영향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2013, 관세학회지 제14권 제1호 p73-p88
- 박홍규,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운영상 제기된 쟁점사례연구”, 2015, 관세학회지 제16권, p125-p146

신동현, “원산지제도 절차적 규정의 적용에 대한 연구”, 2016, 조선대학교 대학원 FTA비즈니스학과 석사학위논문

양박, “한·중 FTA 원산지 규정에 관한 비교 연구”, 2015, 계명대학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원석, “무역전문인력 양성 선진화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용역 보고서, 2009.

유광현외1명, “국내 원산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관세학회지 제16권3호, p103-p123

윤영호,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2010, 두남출판사

이상진외2명, “FTA 원산지규정 분석과 활용전략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제10권, p155-p174

이지수, “원산지사후검증이 FTA 활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관세학회지 제16권 제4호, p93-p115

이창숙외1인, “FTA 체결에 따른 전자원산지증명서 활성화 방안”, 2018, 한국통상정보학회지 통상정보연구p475-p498,

임재욱외1인, “한국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역량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2017, 관세학회지 제18권 제4호 p181-p199

정인교, 「FTA 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3호,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정지영,이중화, “제주가공식품의 중국시장 진출방안에 관한연구”, 2015

정인교·조정란·방호경·김석오, 「우리나라 FTA 원산지규정(ROO) 연구 및 실증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5

정재완, “무역에서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 원산지규정에 관한 고찰”, 「무역학회지」, 제33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8

조미진·여지나·김민성,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차이진, “한·중FTA 원산지규정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2017,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채형복·황해륙, “한·EU FTA 원산지규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제32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최찬호, “FTA확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15

최준, “제주지역 FTA 원산지관리 실태 및 개선방에 관한 연구”, 2016, 경북대학교 대학원 FTA통상학과 석사학위논문

최흥석, “FTA상 특혜원산지규정의 무역장벽효과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홍길중외1명, “화장품산업의 품목별 원산지제도 분석을 통한 FTA 활용전략”, 2016, 관세학회지 제17권 제3호, p137-p157

<웹사이트>

FTA강국, KOREA : <http://www.fta.go.kr/main/>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 : <http://www.stat.kita.net/>

관세청 [www.customs.go.kr/](http://www.customs.go.kr/)

무역협회무역통계<http://stat.kita.net/main>.

제주도청홈페이지<http://www.jeu.go.kr/>

제주연구원 <https://www.jri.re.kr/>

##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Country of origin of Jeju  
Export Companies

Sung-Ju Y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ince its narrow domestic market, Korea inevitably have to choose the conclusion of FTA to activate economic growth based on increasing trade volume from tariff removal or reduction and other countries are also struggling to extend the economic territory via FTA.

To get practical advantages from FTA in the extended economic zone, it is essential to let the business receive benefits of tariff from the buyers in contracted country by publishing Certificate of Origin (COO). However, it has reported that most of the export industry seldom use those benefits of FTA.

Although Korea has planned to extend the economic territory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and business through tariff preferences of FTA, there is a concern that 'Spaghetti Ball Effect' could be emerged since Certificate of Origin in FTA is diversified due to each country and its complexity. According to the surveys on the difficulties and further needs in using FTA by the business in Korea, the result suggested that lack of information (20.3%), burden of post-investigation (15%), difficulty of managing the origin (14.4%), lack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14%), and lack of

motivation (11.4%) were responded as main difficulties

Considering the above analysis, it could be find out that Jeju would have similar difficulties if its local industry engaged in exportation since the industrial structure in Jeju usually feature small size, agro-livestock and service industries. Especially for small-size workplac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at kind of difficulties could be existed in export and how much they aware the benefits of FTA.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refore, is to check the responses condition of the export companies in Jeju about how they manage Certificate of Origin system and to examine the improvement for export promotion in Jeju.

In this research, survey and interview of local business with export records in Jeju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what kind of difficulties exist for the benefits from FTA and improvements need for export promo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blems caused by Country-of-Origin labeling system and investigates specific improvements.

Origin system, which is needed to get the benefits from FTA, can be a non-tariff barrier rather than a method for export promotion to local export industry in Jeju. Therefore expanding export-relevant department which is capable of one-to-one correspondence by integrating distributed education system on FTA and increasing human resources in chamber of commerce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mmediate response can be the main alternative for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Providing incentives to the business with responsiveness to FTA, urging corporation to undertake professional training, and holding one-to-one educational session based on successful cases for the first export industries also could be considered. Furthermore, legal support and logistics system improvement are top priorities for Jeju to promote export condition.

This study researched the improvement of Origin System for export promotion by conducting survey of local export-industries in Jeju. However this study has limitations due to its few populations, so that further in-depth analysis and improvement are expected to be followed.